

국내입법의견조사 94-4

사교육의 합리화

1994. 10.

연구책임자 이준우 (수석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제1편 사교육의 합리화

I. 문제의 소재	7
II. 각계의 입법의견	11
1. 사교육의 사회교육적 기능	11
2. 과외교습의 허용범위	18
3. 학원의 설립원칙	23
4. 학원의 시설기준	24
5. 교습자의 자격기준	25
6. 학원의 관리, 감독	26
7. 기타 지방자치 및 학원관련단체에의 권한 위탁 등	27
III. 입법방향	29
1. 쟁점사항의 정리·평가	29
2. 입법방향	34
IV. 참고자료	45

제2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I. 1994년 정부입법예정 149개 법안관련 입법의견	65
1. 1994년 정부입법예정 149개 법안관련 입법의견목록	65

2. 1994년 정부입법예정 149개 법안관련 입법의견요지	66
II. 최근입법의견 동향	73
1. 최근입법의견 목록	73
2. 최근입법의견 요지	76
III. 주요입법예고법률안	98
1. 주요입법예고법률안목록	98
2. 주요입법예고법률안내용	101
IV. 최신법령 목록	163

제 1 편
사교육의 합리화

I. 문제의 소재

모든 국민은 헌법상의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기본권으로 가진다(헌법 제31조). ①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동조 제1항), ②의무교육(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동조제2항 및 제3항), ③학교교육(제4항), ④평생교육(제5항) 등이 헌법상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교육,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협의의 개념으로 사교육 제외)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사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의 둘은 공교육으로 표현되고, 맨 뒤의 것은 사교육으로 표현된다. 공교육은 비영리이며(사회교육법 제9조), 사교육은 비영리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구분되며, 공교육은 일정한 학력의 인정이 가능한 점(동법 제10조)에서도 사교육과 다르다.

현행법상 사회교육의 보장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국가가 그 지원과 협력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회교육”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동법 제2조). 모든 국민은 사회교육이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으며,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동법 제4조). 사회교육은 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사회교육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사회교육은 영리를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된다(동법 제9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교육법상의 입법취지에 따라 모든 사회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사회교육시설의 하나인 ‘사설강습소’는私人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특별법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 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이 학원, 과외교습소 및 광의의 ‘재학생·친족에 의한 과외교습’이 있다. 그 요건상으로는 학원의 경우는 등록 또는 인가사항이며, 과외교습소는 신고사항, 재학생 및 친족에 의한 과외교습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교습행위로 된다.

한편, ‘학원’이라 함은私人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예컨대 독서실)로서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와 사회교육법상의 사회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사회교육(사회교육법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시설(학원, 과외교습소, 기타)에서 행하여지는 교육을 말한다. 사교육은 그 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사교육과 과외교습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중에서 '과외교습'이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 그 대상과 목적이 초·중·고 재학생의 입시교육, 학력검정시험 준비생의 수험교육으로 한정되고 있다. 즉, 일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8조제1항). 이는 학교교육의 교과과목과 중복되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사회교육기관이 행할 수 없다는 입법취지로 볼 수 있다. 시설 및 교육자의 자격요건이 엄격한 학교교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자율화된 사회교육기관에서 대체적 성격의 교육을 행할 수 없다고 봄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으로서 개별화교육이 불가능한 부분과 학교교육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기술·예능교육 및 학교재학생의 제한적 입시교육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교육의 학교교육에 대한 보충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교습자의 자격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행하여지고 있는 과외교습으로서 대학교 등의 재학생이 행하는 과외교습이 있다. 이는 본래의 사회교육 내지 학원교육과는 무관한 대학생의 경제적 곤란을 보조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과외교습의 원칙적 금지규정의 취지가 약화되었고, 불법과외교습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끊이지 않게 된 원인의 하나로도 되고 있다.

한편, 과외교습의 원칙적 금지와 입시학원에 의한 예외적 과외허용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의 파행성과 함께 입시과외에 의한 학교교육의 왜곡현상 및 교육기관 전과정을 통한 과외현상이 만연하게 되고, 또한 영재교육 내지 조기교육열과 더불어 과외교습의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교육과 공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사교육의 문제는 그 본래적 기능을 무엇으로 보는가, 그 대상과 내용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 제도적 합리화를 통하여 병리적 왜곡현상을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과의 역할분담을 어느 선에서 할 것인가,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습권의 보장 문제는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등의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적 기능과 그 목적상의 차이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및 사교육은 그 시설기준, 교과과목, 교육담당자의 자격 등에서도 구별된다. 특히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는 후자가 전자의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 때문에 공교육으로는 불충분한 분야나, 전인격의 완성이라는 교육목표보다는 기능적·보충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사회교육의 특별한 분야로서의 과외교습은 사회교육이 종래의 계몽적 성격의 국민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의 신지식과 새로운 직업에 대한 교육 및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접근하고 있다. 비록 입시과외라는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회교육 일반으로 흡수하는 것도 일각에서는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사회교육 시설의 운영이 실질에 있어서는 학원 운영방식을 따르면서 외부적 형태는 사회교육을 행하고 있는 각종 문화센터 등의 강좌가¹⁾ 폭넓게 개설되고 있고 또한 사회교육시설이나 학원으로서의 등록을 외면하고 있는 현상은 사회교육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및 대만의 특유한 문제로서 사설기관에 의한 입시교육과 조기교육의 과열문제가 사교육의 영역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과 사교육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전례없이 두 차례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점에서 엿볼 수 있다.

과외교습의 문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의 교육적·사회적 기능의 확

1) 언론단체·백화점 등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의 강좌는 주 1회 2시간씩 3개월과정의 강좌가 입회비 1만원에 7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고, 대부분 사회교육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각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양강좌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실비만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회교육법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고, 규제됨이 없이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대라는 대립적이면서도 보완적인 목표의 조화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근본적으로는 입시문제로 인한 학교교육의 파행성과 초등교육 내지 유아교육의 조기교육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교육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하고, 사교육분야로 한정하여 살핀다면, 사교육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제도화를 통한 조절을 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학원교육으로 대표되는 사교육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중간적 위치에 처해 있으므로 감독과 규제 일변도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강조되는 사회교육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학습권 내지 교육권을 학교교육의 관점에서 제한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교육으로서의 육성권과 교육선택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과외교습의 허용여부와 함께 교습과정과 교습과목의 제한, 시설기준의 합리적 설정²⁾, 교습수요기준에 의한 설립상의 거리제한, 교습자의 자격기준 등은 학원교육에 있어서 그 자율성과 사회교육으로서의 적정성 보장과 관련하여 논의가 되고 있다. 불법과외, 변태과외의 문제는 과외망국론에서 우려하고 있듯이 학교교육에 대한 역기능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도 올바른 사교육의 위상과 제도적 합리화가 요청되고 있다.

참고자료에서 보듯이 1개 이상의 학원 내지 과외교습소에서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 87.1%나 되고, 일반교과목의 과외비율이 43.2%이며, 입시학원을 제외한 유형의 과외로 중·소규모의 학원(예컨대 속셈학원 등)에서 수강하는 비율이 46%나 되는 현실은 전국의 속셈학원이 13,140개소에 정원 2,388,812명, 현원 818,708명이나 된다는 현황³⁾을 고려할 때 단순히 단속이나 지도의 차원을 넘어선 교육적 문제라고 인식하여야 한다.

2) 현행 시·도조례상의 기준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무척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저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입시학원의 경우 제주도의 30평에서 서울의 300평까지, 어학원의 경우 제주도의 30평에서 서울의 200평까지, 기술·예능·가정·사무학원의 경우 경남의 15평에서 서울의 30평까지로 큰 편차를 가지고 지역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이상은 강의실 기준, 참고자료 「시·도별 학원설립 시설규모」 참조).

3) 참고자료 「전국 속셈학원 운영실태조사결과」참조바람. 전국의 학원은 52,586개소로 속셈학원은 이의 24.9%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어학원이나 주산·용변학원 등에서의 변태교습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수의 일반교과목 과외교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육기관으로서의 학원에 관하여 그 제도적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각계각층의 입법의견을 통하여 고찰하고 이에 대한 외국예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의 도출근거로 삼고자 한다.

구체적인 논점으로는 ①사교육의 사회교육적 기능, ②과외교습의 허용범위, ③학원의 설립원칙, ④학원의 시설기준, ⑤교습자의 자격기준, ⑥학원의 관리, 감독, ⑦지방자치관련 기타 학원관련단체에의 권한 위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참고자료로 교육부의 2차에 걸친 입법예고 및 법안 내용, 관련단체의 개정(안) 의견, 학원의 실태에 관한 조사자료 및 통계를 말미에 수록하고자 한다.

Ⅱ. 각계의 입법의견

1. 사교육의 사회교육적 기능

〈소극적 보완기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학원과외의 전면 허용에 앞서 여건개선을 통한 학교교육의 내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학원과외가 전과목의 범위에서 중학생과 국교생, 유치원생에게까지 확대될 경우 학교교육의 불신, 조기과외열풍, 사교육비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가 크다(동아 93.07.04., 23면).
- 국민학교학생의 일반교과에 대한 교육은 학교교육의 영역이며, 평생교육의 영역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사회교육법에 따라 만들어진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속에는 정규학교 학생을 위한 일반교과의 학원교습을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임이 분명한 것이다. 의무교육기관인 국민학교의 정규교과를 학원과외에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의 교육공여의무를 포기하는 처사로 헌법정신에 정면 위배되는 사항이다. 교육부는 정상교육을 육성하는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학교가 가정과 사회의 생활지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조의 차원에서 끝나야 할 것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국민학교 일반교과 학원과외의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 1994.8., 2 - 4면).

○ 이성은(이화여대 초등교육학과 교수)

- 초등교육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전인교육이어야 하는데 열등감과 시기심, 잘못된 경쟁논리만 심어주는 지식위주의 입시교육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다. 아이들이 주체적인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와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하지만 교육현장에 있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개혁의지도 절실히 요구된다(한국 93.10.15.,11면).

○ 김봉란(주부)

- 시험성적만으로 아이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 잘못이나 학업성적이 아이의 존재는 물론 부모의 지위와 위상마저 규정짓는 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학교교육이 다양하고 알차다면 누가 굳이 돈을 들여가며 아이를 학원에 보내겠는가(한국 93.10.15.,11면).

○ 김신일(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 과열경쟁의 대입환경 속에서 학부모들의 그릇된 교육열과 이를 부추기는 과외 시장이 맞물려 과외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진정책을 찾지 못하는 한 과외로 인한 망국론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없다(경향 94.01.31.,01면).

○ 전영미(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정책이나 학교가 얼마나 교육적이고, 아이들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보다는 '높은 점수'에 관심을 집중하고 자기 자식만을 위한 무분별한 경쟁의 후원자 구실을 계속함으로써 파행적인 교육의 공범자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사회적 원인은 학력위주의 사회구조, 이를 뒷받침하는 입시제도, 학부모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의 부재, 사회전체에 만연한 부조리 등에 있다(정사협 주최 '우리의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토론의견, 한겨레 94.02.24.,10면).

○ 전풍자(연세대교수,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 출세·성공 지향적인 자녀교육관, 촌지문화의 확산과 교사에 대한 불신,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과 학원과의 바람 등 가족이기주의와 과잉교육열이 학부모의 문제인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학교교육 등 공교육의 내실화, 학부모의 학교참여의 제도적 보장, 자녀의 진로가 보장되는 학제개편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정사협 주최 '우리의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토론의견, 한겨레 94.02.24.,10면).

○ 김완자(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 올해 들어 불과 2, 3달새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학원수강과 개인과의 가 과열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빈곤한 교육재정 때문이며, 정부가 과감한 교육투자로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파생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또 월반·속진제 도입, 컴퓨터교육 확대, 영어조기교육, 고교평준화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교육개선책은 교육투자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과외나 학원수강 등 학교바깥 교육을 더욱 부추겨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유아교육의 무상 공교육화, 국교생의 학원과의 허용계획철폐가 요구된다(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주최 공청회 발표요지, 한겨레 94.06.03.,18면).

<적극적 사회교육기능>

○ 국정개발국민회의 교육개발위원회

- 학교는 제도적인 정상교육이요 학원교육은 학교라는 제도에 묶이어 못 미치는 점을 보완하는 기관이다. 국제경쟁속에서 새로운 지식은 제도적인 학교교육보다는 학원교육이 앞서가고 있는 점도, 국가공무원을 대기업측에 위탁교육하는 요즈음 현실에 비추어 생각해 보아야 할 학교교육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학원교육이 이 나라에 제공하고 있는 확고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만 한다. 국제화시대, 국제경쟁시대를 살아가야 할 교육수요자들에게는 그들이 원한다면, 기회는 주어질수록 좋다. 세계적인 교육개혁의 흐름은 교육기회 확대, 자율

화, 교육지방자치제화, 개인의 잠재능력 극대화, 개방화에 있다. 교육환경의 세계적 추세도 개방화에 대한 대처, 조기 교육 및 초등교육의 강화, 인간의 주 교육장과 사회화 장소를 학교가 아닌 사회로 규정하고 이를 강화하고 있다. 학원도 엄연히 교육청 당국에 의하여 인가 받은 유사교육기관이다. 그럼에도 학교가 학원교육마저 담당하고자 하는 일은 진실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학원설립 운영에관한법률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건의서」, 1994.8.23., 2 - 4면).

○ 한겨레신문 사설

- 나라의 교육이 궁극적으로 학교교육 위주로만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지 말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열린 교육관을 가진 인사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리라 본다. 학교교육 제일주의는 입시·경쟁 위주의 왜곡된 교육풍토를 부채질할 뿐더러 사회·문화·인류학적인 모든 산 교육의 기회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또 그 교육성과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획일적인 학교교육체계를 하루 빨리 벗어나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의 기회를 통하여 누구나 자존심 있고 자신감 있는 정당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 목표라 할 것이다(한겨레 93.07.15.,03면).

○ 국민일보

- 지난 81년 국보위의 「7·30조치」로 과외가 전면금지된 이후 10여년간 「과외망국론」이 교육계를 지배했다. 이 조치는 국민의 학습권을 봉쇄하는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었으나 정부는 학생을 학교에 묶어 둠으로써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 정의가 구현된 양 가장했다. 그러나 사교육의 공급이 완전통제된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교육암시장이 생겨났고 불법고액과외는 부유층의 전유물이 됐다. 이는 경제력과 학력이 비례하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당초 의도와는 달리 교육복지의 붕괴를 낳았다. 국민의 지적수준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현실에서 더 이상 학교교육만이 절대시될 수 없다(국민일보 93.07.28.,09면).
- 학교와 학원은 나름의 영역을 갖고 있으며 상호보완관계에 있다는 교육학자들의 의견이다. 이제 과외망국론의 도그마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은 공공성을 중시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지적 문화적 수준을 갖추도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 우리나라처럼 한 학급 학생수가 50명을 웃도는 교육현장에서는 상위권 학생의 재능을 조기 육성하기도, 하위권 학생의 수업결손을 보충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사회교육은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공교육의 보수성과 경직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원 등 사회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자율적인 학습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정보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학교교육만으로는 급증하는 지식 및 정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현재 3차교육개혁의 최우선과제로 「평생교육진흥」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다양한 사회교육기회를 제공해 총체적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국가경영전략이다.

이번 학원관련법 개정방향은 사회교육시장의 각종 진입 장벽을 제거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시대조류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회교육이 물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학교교육에서 결핍된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입시제도 개선 및 학벌주의 청산과 맞물려 있다. 결국 사회교육의 육성은 학벌사회에서 학력사회로 옮겨가야 한다는 과제의 전제이자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국민 93.07.28.,09면).

○ 교육부

- 사설학원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유치원생을 비롯한 초·중등학생들의 학원수강을 대폭 허용한다는 것이 입법예고한 개정법안의 골자다. 「가르치려는 사람」과 「배우려는 사람」 모두에 대한 행정규제를 풀어 지식산업에 자유시장원칙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사설학원의 사회교육기능을 활성화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평생학습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교육 위주로 일관하여 온 기존의 교육정책기조를 전면 수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국민일보 93.07.28.,09면).
- 사회교육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사회교육=입시과외」라는 그릇된 등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교육은 학교를 마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교육이 핵

심이 되어야 한다. 이 같은 계속교육은 정보화시대를 살아갈 현대인들에게 생존을 위한 필수과정이 되고 있다(국민일보 93.07.28.,09면).

-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국교생의 학원과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50명을 훨씬 넘는 열악한 여건상 개별지도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소질을 계발할 여지가 없어 학원교육이 이를 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또 맞벌이부부의 급격한 증가로 어린 학생들이 전자오락실·만화가게 등 비교육적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보다 학원과외가 교육적이다. 지난 해('93년) 불법과외단속에서 인가과목위반 등 변태운영으로 적발된 건수만도 5천8백 75건에 달하였던 바 언제나 불법·변태라는 그물로 막아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한국 94.03.23.,30면).
- 사교육비 일부를 공교육비로 끌어들이는 등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성적만을 따지는 교육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김숙희교육부장관, 교육개혁관련발언, 국민 94.03.31.,09면).
- 사회교육기관인 학원이 단기주입식 입시과외위주로 성장한 결과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자발적인 학습태도를 배워야 할 학생들의 창의력을 고갈시키는 역기능이 두드러져 교육적으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김성동 교육부사회국제교육국장, 국민 94.03.31.,09면).
- 산업 사회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교육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질높은 사회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특색있는 지방사회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제2차 입법예고, 94.07.29 교육부공고제1994-22호).

○ 교육계

- 학습지진아의 상당수가 저소득층 자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학원교육을 통해 학원결손보충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원칙에 부합한다(국민일보 93.07.28.,09면).
- 재학생들의 학교수업 이탈현상은 일선고교의 3학년 2학기 수업이 2차 수능시험준비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 본고사 준비생들에게는 적절한 진학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사들도 본고사를 준비하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입시학원에서 공부를 보충하도록 권유하는 실정이다. 특히 본고사과목이 대학별

특성을 도외시한 채 국·영·수등 도구과목에 몰려 있어 상위권 수험생들의 「탈학교, 학원집중」현상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선교사들은 「수능시험 도입이후 입시학원의 효용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며, 앞으로 대학들이 본고사 과목을 다양화한다면 학원과외열기를 누그러뜨리고 학교교육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다(국민 93.08.26.,18면).

○ 이종재(서울대 교육학과교수)

- 고교교육의 파행운영과 학습목표가 대학진학으로 귀결됨으로써 입시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대학별 본고사등 학력경쟁의 입시가 계속되는 한 입시산업에 대한 수요는 여전할 것이다. 학교와 학원등 입시산업이 추구하는 목표의 차를 분명히 하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만이 학원들로 하여금 현 학교교육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예술·컴퓨터 등 기술·예능 분야의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제위치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국민 94.03.31.,09면).

○ 문상주(학원총연합회 회장)

- 성적이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한 교실에 50명 이상씩 몰아넣고 평준화교육에 매달리는 학교교육이나 학제개편없이 대학정원을 동결한 채 치르는 대학입시 제도가 지속되는 한 학원을 비롯한 입시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교육 제도는 산업화에 걸맞는 기능인력을 길러내기 보다는 인문계 학생들을 더 많이 길러내고 있다. 고졸자 취직이 보장되지 않고 대졸실업자도 13만명에 달한다. 기존 교육정책으론 선진국 교육체제와 경쟁할 수 없다. 과열과의 재연이 우려되는 국·영·수 중심의 대학별고사 확대는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완벽한 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여기서 학교와 학원과의 상호보완적인 기능이 모색될 수 있다. 학교에 먼 년뒤에 교체해야 할 컴퓨터 등 각종 값비싼 실습기자재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낭비다. 그보다는 국가가 실습비를 보조하고 항상 변화에 민감한 해당학원에서 학생들이 실습교육을 받으면 가계나 국가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학교가 성적부진 학생들에게 학원에서 필요한 단계의 보충교육을 받도록 권할 수 있다. 물론 이를 관장하는 학교·학부모·학원 공동의 기구가 필요하다(국민 94.03.31.,09면).

2. 과외교습의 허용범위

〈국민학생의 일반교과목 과외교습〉

〈찬성〉

○ 교육부

- 사설학원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유치원생을 비롯한 초·중등학생들의 학원수강을 대폭 허용할 방침(제1차 입법예고 93.6.7).
 - 고교생의 경우 대형 입시계학원에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과외교습소 교습은 법률로, 소규모학원 교습은 조례로 제한하기로 하고, 중학생의 과외교습소 교습을 법률로 규제해 입시계학원과 소규모학원에만 다니도록 하되, 소규모학원 교습도 시설기준과 교습수요기준 등을 적용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학원이 학교수업결손 보충 등 정상적인 사회교육기능에서 이탈해 고액 변태입시과외 위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고교과정은 교습내용의 수준이 높아 사실상 입시전문강사만이 교습할 수 있고, 이들이 소규모학원과 과외교습소에 침투해 편법 고액과외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가 학생들에게 과외교습소 등을 알선해 주는 데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법에 「교사의 알선행위금지」조항을 명시해 학원추과 교사를 쌍벌죄로 함께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
- 당초 유치원생등 미취학 어린이에게 일반과목 과외를 허용하려던 방침을 바꿔 미취학 아동의 과외교습은 예체능과목에 국한시키기로 함(국민 93.07.28., 19면).

- ①유치원, 국교생, 중학교생들의 학원과 과외교습소과외 금지, ②국교생은 금지가 원칙이나 시·도교육감이 과목과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 ③유치원생은 미술·음악등 예능과목에 한해 허용(당정회의 제출 개정안제3조: 93.08.19)
- 규제위주의 규정을 바꿔 될 수 있는 한 자율적인 학원운영을 보장하려 하였으나 교육단체등의 반대가 의외로 강해 입법예고 내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과외교습소에서의 과외허용방침이 철회된 것은 고액 과열과외를 부추긴다는 반대가 워낙 거세어 일찌감치 결정되었다(교육부관계자, 조선 93.08.20., 22면).

- 국교생 학원과의 허용과목은 시·도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항이나 자연 등 탐구과목이 아닌 한문, 영어, 산수 등 일부과목이 허용대상으로 적합할 것으로 본다(김성동 사회국제교육국장, 한국 93.08.20.,30면).
- 국민학교 재학생에 대한 학원에서의 국어 영어 산수 등 일반과목 과외교습을 각 시·도 교육감의 재량으로 허용할 방침이며 3월중으로 입법예고 한 뒤 5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임(국회제출 자료, 한국 94.03.23.,31면).
- 국민학생에 대하여 국어·영어 등 일반과목의 학원과외를 허용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현행처럼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함. 미취학아동(유치원생)의 일반과목 학원과외의 경우 지난해 입법예고(제1차)의 금지방침에서 후퇴, 현행법처럼 아예 관련규정을 두지 않기로 해 사실상 허용하기로 함. 다만 독서·작문 등과 같이 학교수업으로 충분치 않은 특정분야의 학원과외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조선 94.06.10.,31면).
- 국민학교 재학생의 일반 교과목의 과외 교습학원설립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원설립이 가능하도록 함(제2차입법예고, 94.07.29).
- 국교생의 학원과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으나 이에 대한 한국교총·전국국민학교교장회 등 교육단체의 반대의견이 많아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8월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임(서울 94.08.18.,01,03면).

○ 성양모(능력속셈학원장)

- 현행 사교육의 실태를 살펴 보면, 입시지도를 위한 대형 입시학원은 많지만 초·중학생의 기초학력 신장과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하여 집 가까운 곳에서 개별화된 완전학습 형태의 교육지도 방법을 취하는 소규모 학원은 없는 실정이다. 초·중학생들의 부진한 학력을 보충하고 개별화된 학습지도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사회교육기관의 하나로 보습학원(가칭)을 법규로 신설하여 국민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교육적 평등이상을 실현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보습학원은 초·중학생 중에서 기초학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부진한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및 필요한 과목을 중심으로 개별화학습을 지향하여 학력을 신장시키는 형태이다.

○ 국정개발국민회의 교육개발위원회

- 인가교습과정을 입시교육학원, 어학교육학원, 예능교육학원, 기술교육학원, 문화교육학원, 사무교육학원, 초·중등보충교육학원, 독서교육학원 등으로 구분하며 인가과목은 인가대상에서 제외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전계 의견서, 16면).

〈반 대〉

○ 동아일보 사설

- 국민학교 과외허용은 하고싶은 공부를 어디서나 자유롭게 보장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2세교육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설학원에 무한정 맡기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다. 어린이들의 과중한 과외는 무엇보다 학교에서의 정기교육과정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신체 정서 발달을 해칠 우려가 있다. 국민학교는 어린이들이 친구와 어울려 즐겁게 놀고 자연과 사회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건강한 교육과정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어린학생들이 전자오락실이나 만화가게 등 비교육적 환경에 노출되는 것보다 학원과외가 낫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으나 불량한 교육환경을 학원과외로 해결하려 드는 발상부터가 잘못이다.

현재도 불법과외학원이 전국 곳곳에 깔려 있다. 국교생과외가 허용되면 부설학원이 더욱 난립할 것은 뻔하다. 교육당국이 교육정상화의 길을 자꾸 다른 방향에서 찾으려 하는 데 문제가 있다. 국민학교의 정규교육은 추호라도 손상이 가서는 안된다. 과외를 계속 늘려가다가는 자칫 학교가 맡고 있는 국민교육의 포기사태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 점이 바로 문제이다(동아 94.03.24.,03면).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육부의 국교생 학원 과외교습 허용조치는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국민학교 교육정상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서울 94.03.27.,18면).
- 의무교육기관인 국민학교의 정규교과를 학원과외에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의 교육공여의무를 포기하는 처사로 헌법정신에 정면 위배되는 사항이다. 국민학

교 일반교과의 과외허용 착상은 교육본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가 아니라 정상교육을 교육부 자체가 왜곡시키겠다는 자해행위이며 더 나아가서 정상교육의 책임회피 수단이거나 특정집단의 교섭에 편승한 처사라는 인상을 던져주고 있으므로 더 이상 반복하여 거론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며 반드시 백지화시켜야 한다(한겨레 94.08.23.,16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성명서, 4-5면).

○ 초등교육협의회

- 국교생의 학원과의 허용이 학생·학부모로부터 학교교육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교생의 인간교육에 지장을 가져오며 오히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에 반대한다(서울 94.08.18.,03면).

<기 타>

○ 한국일보 해설

- 교육부가 22일 현실적으로 보편화된 국교생에 대한 과외교습을 양성화하기로 함에 따라 교육기회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지만 부작용과 역기능도 우려되고 있다. 중고교에서의 입시도구과목중심의 파행적 교육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가 국교생의 국어 영어 산수과목 학원과의를 허용키로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과외양성화가 일부 부유층 학부모의 거액·비밀 음성과외를 조장하게 되면 과외망국현상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한편 유치원생에 대한 과외교습허용여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교육부는 지난 해 유치원생의 과외교습도 전면 허용하려다 유아교육학화, 유치원연합회 등의 반대에 부딪쳐 결정을 보류하였다. 현행법에는 유치원관련규정이 없어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상태다(한국 94.03.23.,30면).

○ 설희관(한국일보 사회부차장)

- 대입시제도가 수능시험위주로 바뀌고 나서 과외욕구가 다소 해소되는 기미가 보였으나 내년 입시에서 본고사 시행대학이 47개 대학으로 급증하자 상황은 달라졌다. 고액비밀과외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15개 시·도 교육감이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 시행 재고와 수능시험폐지 검토를 교육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학교교육정상화가 화급한 마당에 교육부는 국교생의 일반과목 과외를 허용,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교육부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이상 학원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한국 94.03.24.,02면 칼럼).

〈유아 과외교습〉

○ 한국유아교육학회

- 유치원 적령아동에 대한 과외교습은 예능과목에 한정되어야 한다(제1차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 한국유치원협회

- 유치원 적령아동에 대한 과외교습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제1차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 이종희(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

- 입시위주 교육의 부정적 영향이 2,3세 유아에게까지 과외교습을 시키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아동을 불모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업자, 맹목적이고 경쟁적 교육열을 가진 부모, 그리고 뚜렷한 교육적 신념이 없는 정책 입안자들의 공동책임이다. 지난 10년간의 조기 특수 과외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중학생인 아동과 국민학생인 아동들이 과거 취학전에 과외교육을 받았던 비율(각각 65.6%, 75.6%)보다 현재 유치원, 유아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과외교습 비율(92.3%)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부모들이 조기과외교습에 대한 뚜렷한 교육관이 있어서라기보다 남보다 앞서게 하려는 경쟁의식과 공부만 잘하게 하려는 편협한 기대감 때문이다.

유아 학원과의 전면허용은 교육의 목표인 자율성과 창의성·인간존중 의식을 무시한 잘못된 처사이다.(한국유아교육학회 등 17개 단체 주최 「유아 과외교습 이대로 안된다」 강연회, 발표문, 세계 94.07.05.,10면).

○ 홍강의(서울의대 소아정신과 교수)

- 조기과외교습이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놀이시간이 줄고 억지로 학습하는 데

다른 우울한 성격감, 호기심의 충족과 창조성 발달의 저해, 배움에 대한 부담감, 과중한 스트레스, 부모와의 관계악화, 정상발달 저해에 따른 이상성격 형성과 사회성 개발의 지장 등을 초래할 수 있다(한국유아교육학회 등 17개 단체 주최 「유아 과외교습 이대로 안된다」 강연회, 발표문, 세계 94.07.05., 10면).

3. 학원의 설립원칙

○ 교육부

- 교습수요기준은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제1차 입법예고 93.06.07 교육부공고제1993-10호).
- 교육청별로 교습수요기준(동일계, 동일과목 학원간의 거리제한)에 따라 학원의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기로 함(조선 94.06.10., 31면).
- 인가·등록학원의 구분이 실익이 없으므로 인가학원으로 일원화하며, 과외교습소의 신고행위를 간소화하여 등록사항으로 하고, 대학생의 과외교습행위를 간략한 신고사항(통계자료로만 활용)으로 함(제1차 입법예고 93.06.07 교육부공고제1993-10호).
- 현행법상 학원을 설립·운영함에 있어서 교습과정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시의 구비서류가 동일하고 그에 대한 지도·감독도 동일하여 그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등록제로 일원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제2차 입법예고, 94.07.29 교육부공고 제1994-22호).

○ 국정개발국민회의 교육개발위원회

- 학원의 인·허가 교습과정 및 교습과목은 통폐합 조정되어야 한다. 인가교습과정은 입시·어학·예능·기술·문화·사무·초중등보충·독서교육학원등으로 구분하고, 수백개로 분류되어 있는 인가과목은 인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인가교습과정내에서의 유관성, 환경성, 자격성만을 행정지도 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로써 행정간소화와 유관교육의 연계로 인한 교육효과의 극대화, 실효성있는 법령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전계 의견서, 16면).

4. 학원의 시설기준

○ 교육부

- 다수인의 범위를 교습과목에 따라 인원수를 따로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시설기준을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과도하게 규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차 입법예고, 93.06.07 교육부공고 제1993-10호).
- 학원의 단위 시설별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교습과정별 시설규모는 지역실정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하여 지방교육자치 정신에 부합토록 함(제2차 입법예고 94.07.29., 교육부공고제 1994-22호).

○ 국정개발국민회의 교육개발위원회

- 시·도 조례로 지역사정에 맞게 시설규모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교습과정별로 시설규모를 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 따라서 지역별로 지역사회에 맞는 학원시설만을 총괄적으로 정하면 된다(전계 의견서, 13면).

○ 시·도 교육감

- 학원의 시설기준 및 교습수요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정하여야 한다(제1차입법의견에 대한 제출의견).

○ 한국학원총연합회

- '과도하게 규정하지 않도록'이라는 모호한 규정은 반대한다(제1차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 한국자동차학원연합회

- 교습수요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1차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 학원단체(소규모)

- 법령에서 시설기준을 하향하여 시·도 조례의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차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5. 교습자의 자격기준

○ 교육부

- 국교생 대상 과외학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의 전공과목, 학력, 연령, 경력 등의 학원내 게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신설하기로 함(한국 93.08.20.,30면).
- 교육감은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차 입법예고 94.07.29.,교육부공고제1994-22호).

○ 국정개발국민회의 교육개발위원회

- 일정학력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부전공자에게는 관계 있는 자격증(공신력 있는 대회에서의 입상자,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 등)으로 대치하게 하며(특수분야 제외), 교육학 미필자에게는 연수과정을 마련, 수료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전계 건의서, 15면).

○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 학원강사의 자격은 현재 국민학생에 대한 경우 ①유아교육학과 졸업생, ②보육교사양성소(1급, 2급) 수료자, ③사회교육과정(1년) 수료자, ④사회교육기관(: 문화센터, 6개월) 수료자에게 특별한 구별없이 인정되고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의 경우 강사자격은 대졸자로서 교직과목 이수를 요건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고등학생에 대한 강사자격 요건인 과목 전공자의 태부족이 예상되므로 교육부가 학원 경력 3년 이상인 강사들을 대상으로 자격 검정시험제도를 신설하거나 관련단체에 이관하여 일정성적 이상인 강사에게 전공자와 똑 같은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학원제도(조례) 개선안」, 3면).

6. 학원의 관리, 감독

○ 교육부

- 학원에 대한 자율성이 신장되도록 지원하되, 현황통계등 각종 보고의무를 강화하여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제1차입법예고 93.06.07., 교육부공고제1993-10호).
- ①교육감은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한 등록취소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며, ②건전한 학원교육을 위하여 학원 설립·운영자로서의 책무를 규정하고, 결격조항을 신설하고, ③교육감은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④ 벌칙을 강화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도모함(제2차입법예고 94.07.29., 교육부공고제1994-22호).

○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수를 통한 기득권 유지보다는 강사의 자질 즉, 인정요건으로 해당학원에서의 중학생, 고등학생의 수강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상위법을 개정하여 조례사항에 학원 인가의 시설 규모와 구체적 기준을 위임하는 경우 교육위원의 분포에 따라 공정성이 좌우될 우려가 있다. 국민의 평등권과 직업 선택권, 그리고 기회균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규제조항이나 독소조항은 철폐해야 한다(전계 「학원제도(조례) 개선안」, 1면).

○ 학원연합회 속셈분과위원회

-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양성 및 연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권한과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면).

7. 기타 지방자치 및 학원관련단체에의 권한 위탁 등

〈권한 위임〉

○ 교육부

- 학원 관련 단체에 권한을 위탁하여 활성화 및 윤리단체로서의 자율기능을 유지하도록 함(제1차 입법예고 93.06.07., 교육부공고제1993-10호).

○ 학원연합회 속셈분과위원회

- 모든 것은 공무원만이 할 수 있고 공무원만이 청백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과감하게 지도·감독권(특별사항 제외)을 유관단체(학원연합회등)에 이양하여 업무과다로 인한 지도, 감독 불능상태를 면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자율화시대에 자율체제를 갖추게 하고, 철저히 지켜지는 법기능을 살리어, 사회교육분야의 학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통하여 양보와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전계 의견서, 18면).

〈수강료 관련〉

○ 교육부

- 수강료의 기준은 주무관청에서 정하여 학원으로 하여금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1차 입법예고 93.06.07., 교육부공고제1993-10호).
- 과외양성화에 따른 학원수강료 추이와 관련, '학원과외가 금지되는 상황에서는 위험부담때문에 고액화된다. 학원간 자유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수강료가 오히려 하락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무인가 과외에 대하여 폐쇄·고발외에는 달리 행정제재를 취할 수가 없었으나 양성화된 후에는 적정한 수준으로 수강료를 하향유도하는 것이 가능하여진다(국민 93.07.28., 09면).
- 교육개방을 앞두고 학원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 연말쯤부터 학원수강료를 완전자율화하기로 하고 최근 경제기획원 등에 학원수강료를 물가통제품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함(조선 94.06.10., 31면).

- 현행법상 주무관청의 수강료 기준 설정권을 삭제하되, 수강료의 게시를 의무화하고 교육감은 수강료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2차입법예고 94.07.29., 교육부 공고제1994-22호).

○ 한국학원총연합회

- 학원수강료의 기준설정에 반대한다. 수강료 기준설정은 학원 자율에 일임하여야 한다(제1차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 광주직할시 교육감

- 교습과정별 수강료 최상한선 기준을 교육부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하여 책정하여야 한다(제1차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 경향신문 사설

- 80년 5공화국의 강권통치아래 취해진 교육개혁조치로 일순 사라졌던 과외는 일부부유층의 「지하과외」로 숨어들었으나, 89년 대학생과외 및 학원과외 허용조치를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학원의 설립및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일반인들의 과외교습 금지조항은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해 과외인구는 고삐풀린 말처럼 급확산되었고 과외비 역시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아왔다(경향 94.01.31.,01면).

<교육환경>

○ 교육부

- 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학원과 유해업소의 기본거리는 현행기준을 유지하되, 위험물 취급소, 소음·먼지가 심한 업소등은 상당한 거리를 두도록 하고 기존 유해업소의 인접장소에 학원설립제한을 법률규정에 명시하도록 함(제1차입법예고 93.06.07., 교육부공고제1993-10호).

○ 이영호(어린이문화진흥회 상임이사)

- 어린이문제를 유발하는 각종 유해환경을 방치할 경우 이들의 장래에 심각한 사

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범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수립,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국민 94.03.31.,09면).

Ⅲ. 입법방향

1. 쟁점사항의 정리·평가

1) 사교육의 사회교육적 기능

학교교육으로 대표되는 공교육과 학원교육으로 대표되는 사교육의 관계에 있어서 양자가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체관계에 있는가 하는 관점상의 문제가 있다. 이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학원교육에 대한 교육정책의 문제가 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학교교육의 파행성과 부실성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사회교육의 기능과 입시교육의 기능 및 학교교육의 보충적 기능에 대한 역할분담의 문제는 여전히 정립되고 있지 않다. 사교육의 사회교육적 문제는 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역할에 관하여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눌 수 있다.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교육의 역할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며, 사회교육은 평생교육의 영역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학교교육은 공공성을 중시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지적·문화적 수준을 갖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보는 견해와, 인간의 주교육장과 사회화장소를 학교가 아닌 사회로 보고, 획일적인 학교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풍부한 교육의 기회를 통하여 개인의 자율적인 학습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사회교육은 학교교육을 마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교육이 핵심이 되어야 하며, 학교교육을 대체하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사교육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전자에 속하고, 사설학원의 사회교육기능을 활성화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평생학습체계를 마련하여 공교육 위주로 일관하여 온 기존의 교육정책 기조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후자에 속한다고 하겠다.

결국 논점의 핵심은 사교육 중에서도 학교교육과 일반적 사회교육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학원교육 특히 학교교육을 직접적으로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의 학원교육을 어떤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이다. 입시학원과 일반교과목 과외학원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학교교육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그 교육적 기능의 문제이다.

현실적인 사교육비의 부담문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창의력을 고갈시키는 역기능의 문제, 공교육의 경직성과 보수성을 보완하는 순기능적 문제, 학습지진아의 학원교육을 통한 학력결손보충의 기회 보장, 입시산업의 성장과 이에 따른 학교교육의 왜곡화문제 등이 학교교육과 학원교육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의 문제점과 학원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양자를 각각 별개의 문제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면 후자의 학원교육은 당연히 본질적인 사회교육의 영역으로 복귀될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관점의 구분이 가능하다. 공교육의 내실화문제와 학원교육의 문제를 상호 연계하여 파악하는 견해가 대중을 이루고 있으나, 양자를 독립적으로 파악하여 각각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교육부의 입장, 교육학계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 및 관련단체의 입장이 위의 관점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이 개선되어야 하고,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인 방법론에서 학원교육을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인정하고 보완하여야 할 것인가에서 차이가 있다.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학원교육에 의한 보완교육은 필요악이라는 학부모와 학원계의 입장, 공교육의 구조적 문제와 학교교육의 정상화만이 학원교육으로 하여금 진정한 사회교육으로 역할하게 할 것이라는 교육학계의 입장, 사설학원의 사회교육기능을 활성화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평생학습체계를 마련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이 바로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 과외교습의 허용범위

이는 교육부의 2차에 걸친 입법예고가 문제의 민감성과 관련단체간의 의견대립을 엿보게 하고 있다. 교육부가 입법상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는

미취학 아동의 일반과목 과외의 허용문제 나아가 국교생에 대한 일반교과목의 학원과외 허용문제에 대하여 교육계와 학부모 및 학원계의 첨예한 의견대립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과외양성화에 대한 과외망국론,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효과의 극대화라는 양극의 의견 및 국민학교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의 부담 가중문제, 부실학원의 난립문제, 고액비밀과외, 불법변태적 과외의 제도적 흡수 및 관리의 문제 등이 현실적인 사항으로 과외교습의 허용범위와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다. 교육단체는 국교생의 학원과외에 대하여 일반과목은 절대 불허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학원계의 경우 현실적으로 소규모학원에서 이미 행하고 있고, 비교육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과 기초학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부진한 학생에 대한 개별화학습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학원교육이 학교교육에 대한 기능적 관계에 있어서 대체관계나 보완관계나 하는 관점에서 기인된다. 교육계의 입장은 역기능적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한다고 보는 것이고, 학원계에서는 학교교육의 미비점을 보완 내지 보충하는 기능을 학원교육이 행하고 있으므로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 유아 과외교습

유치원 적령아동에 대한 과외교습은 현행법상 법적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이는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전면적인 금지의 입장과 예능과목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 및 현행처럼 사실상의 허용입장으로 대별된다. 국교생이상의 학생에 대한 학원과외와는 달리 유치원교육이 정규 학교교육과는 차이가 있고, 조기교육 내지 영재교육이라는 학부모의 욕구가 강한 분야이므로 유아교육학회의 조기과외교육의 비교육성 문제제기와 학부모의 일반적 욕구가 대립되고 있다. 교육부의 입장은 일반과목 과외를 허용하려던 방침을 세웠다가 예능과목에 국한하기로 변경하였으나 그 후 사실상 백지화하여 현행처럼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사실상의 허용으로 입장을 전환하였다.

3) 학원의 설립원칙

93년의 입법예고에서는 교습수요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

자치와 함께 학원운영의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94년 입법예고에서는 교육청별로 교습수요기준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폐지하기로 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인가학원과 등록학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93년의 입법예고에서는 인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하였고, 94년의 입법예고에서는 등록제로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전환하였음. 학원계에서는 인가제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이며, 인가교습과정의 구분을 현실성있게 재조정하고 인가과목은 인가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지도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습과정의 구분에서는 초중등보충교육학원의 허용여부가 쟁점이 되며, 인가과목의 규제여부가 수백개로 되어 있는 인가과목의 탄력적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4) 학원의 시설기준

학원의 시설기준은 학원의 단위 시설별 기준과 교습과정별 시설규모 및 교습수요기준이 있다. 구체적인 시설기준의 근거법령을 대통령령으로 할 것인가, 조례에 위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또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의 적정선을 하향조정할 것인가 상향조정할 것인가도 교습과정별간의 형평성과 교육적 효과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되고 있다. 대형학원의 규모와 소규모학원의 최소규모에 대하여 현재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상한선 내지 하한선을 어떻게 법령으로 구체화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학교교육의 경우 시설규모와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아울러 이는 소규모학원의 현실적인 존재의 문제로 직결되기도 하다.

제2차입법예고에서는 학원 단위시설별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교습과정별 시설규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교육감측에서는 학원의 시설기준 및 교습수요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 소규모학원단체에서는 시설기준을 하향하여 조례의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교습자의 자격기준

학원강사의 자격과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자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교습의 질적 수준에 관계되고, 후자는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에 관련된

것이다. 교육부는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할 방침을 제1차 입법예고에서 표명하였고, 학원계에서는 학력과 경력에 의한 자격기준을 두되 현실적인 강사 확보상의 문제점 때문에 전공과목에 대한 범위에 탄력성의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결국 학원교육을 사회교육의 일부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학교교육의 분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게 될 것이다. 법체계상으로 본다면, 학원교육은 사회교육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회교육법상의 교습자자격기준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교육의 경우 교습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없고 다만 사회교육전문위원을 두게 할 뿐이다. 사설강습소는 그 진흥·육성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사회교육법 제22조) 이에 따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사설강습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6) 학원의 관리·감독

교육부의 방침은 학원에 대한 자율성확보(제1차입법예고)와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책무, 결격조항신설 및 연구계획의 수립과 실시, 벌칙의 강화(제2차 입법예고)로 요약할 수 있다. 학원계의 입장은 기득권의 보호 보다는 강사의 자질에 따른 교육질의 향상 및 법령에 의한 규제조항이나 독소조항의 폐지로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단속 내지 규제위주에서 적극적인 연수 및 양성을 통하여 학원교육을 정상화 내지 합리화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고 있다.

7) 기타 지방자치 및 학원관련단체에의 권한 위탁 등

학원관련단체에 권한을 위탁하여 자율기능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며, 학원계의 요구도 이와 동일하다.

가장 첨예한 문제는 수강료에 관련된 것인데, 교육부는 수강료의 기준은 주모관청에서 정하되 학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정도 내지 행정지도의 수준으로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하여 학원계는 완전 자율을 주장하고, 교육감측에서는 수강료 최상한선 기준을 교육부에서 책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액과외 또는 과외비의 상승은 사교육비의 부담증가로 이어지는 점에서 자율적인 책정이나 타율적인 기준설정이나가 쟁점으로 되고 있다.

한편 교육환경적 측면에서 학원의 설립제한 문제가 있다. 교육부의 제1차입법예고에서는 유해환경의 경우 법률로 학원의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종합과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 법령상의 문제에 대한 입법방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 입법방향

사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사회교육(사회교육법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시설(학원, 과외교습소, 기타)에서 행하여지는 교육으로서 그 중에서도 사회교육적 본질과 학교교육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분야로 과외교습을 들 수가 있으며, 사교육의 문제는 사실상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외교습'이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 그 대상과 목적이 초·중·고 재학생을 제외한 자에 대한 입시교육, 학력검정시험 준비생의 수험교육으로 한정되고 있다. 즉, 일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8조제1항). 이는 학교교육의 교과과목과 중복되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사회교육기관이 행할 수 없다는 입법취지로 볼 수 있다. 시설 및 교육자의 자격요건이 엄격한 학교교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자율화된 사회교육기관에서 대체적 성격의 교육을 행할 수 없다고 봄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으로서 개별화교육이 불가능한 부분과 학교교육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허용하고 있는바, 기술·예능교육 및 학교재학생의 제한적 입시교육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이러한 사교육의 학교교육에 대한 보충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교습자의 자격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행하여지고 있는 과외교습으로서 대학교등의 재학생이 행하는 과외교습이 있다. 이는 본래의 사회교육 내지 학원교육과는 무관한 대학생의 경제적 곤란을 보조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과외교습의 원칙적 금지규정의 취지가 약화되었고, 불법과외교습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끊이지 않게 된 원인의 하나로도 되고 있다.

과외교습의 원칙적 금지와 입시학원에 의한 예외적 과외허용은 학교교육의

과행성과 함께 입시과외에 의한 학교교육의 왜곡현상 및 교육기간 전과정을 통한 과외현상이 만연하게 되고, 또한 영재교육 내지 조기교육열과 더불어 그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교육과 공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사교육의 문제는 그 본래적 기능을 무엇으로 보는가, 그 대상과 내용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 제도적 합리화를 통하여 병리적 왜곡현상을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과의 역할분담을 어느 선에서 할 것이냐,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습권의 보장 문제는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등의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도적으로 볼 때, 사교육의 교육적 기능과 자율성 보장을 어느 선에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 학원의 설립기준에 있어서 그 시설기준, 인적기준, 교습수요기준에 의한 규제와 한계문제,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수강료의 가이드라인, 교습과목의 경직성 등의 문제로 된다.

첫째, 사교육의 교육적 기능과 자율성 보장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과외교습이 사회교육의 하나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교육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교육은 국가에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진흥하여야 할 부문이며, 이를 규제나 감독의 차원에서 아니라 자율성과 보충적 기능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의 문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로 해결되어야 그 본질에 적합할 것이다.

한편 사회교육법에서는 일반적 사회교육과 과외교습으로 유형을 나누어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즉 대학생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대별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사실상 제한이 거의 없이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과외교습'으로 정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교습 시설에 의한 교육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재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만 학원에서의 교습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교교육의 방학기간 외에는 어떤 형태든간에 사교육을 불허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교교육상 개별화교육의 불충분성을 인정한 기술·예능 부문에 관하여는 교습시설에 의한 교육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이 재학생에 대하여 방학기간과 관계없이 사실상 연중 학원수

강을 현재 허용하고 있고, 대학등의 재학생이 행하는 과외교습은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운용상 및 법리상의 무원칙을 보이고 있다. 비록 대학의 재학생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함이라는 정책적 배려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고등학교 이하의 재학생에게 엄격하게 사교육을 금지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정면으로 반하고 있고, 사교육시설의 기준과 강사의 자격기준 및 교습과목의 인가제 등으로 관리·감독을 행하고 있는 교습시설에 의한 과외교습을 불허하고 있는 것과 일견 모순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파행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중·고 학생에 대하여는 방학기간중에만 학원과외를 허용하던 정책상의 원칙이 사실상 과외허용으로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사교육의 교육적 기능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밖에 없다. 하나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학교교육과는 구별되는 사회교육으로서의 보충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교육의 불완전성 내지 피교육자의 학습수준 보완이라는 관점의 보습교육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교육 내지 학습의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 학교교육과 동일한 사교육과, 학교교육과는 구별되는 사교육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의 형태에 해당하는 사교육인 바, 이는 다시 학습자의 주관적 동기에 따라 입시교육과 보습교육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행 입시제도하에서는 입시교육과 보습교육의 엄밀한 구별이 어렵다. 인문·사회계 중고등학교 학생은 일단은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적 기능이 문제가 되는 사교육은 그 목적이 입시에 있든, 보습에 있든 그 동기에 관계없이 부족한 일반 교과목의 학습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교교육 외의 교육이라고 객관화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교육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이 파행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현실적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사교육의 역기능은 학습자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심화된다고 보는 것이 교육학자들의 견해이다. 교육은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현시키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 바, 자발적인 학습태도를 배워야 할 학생들의 창의력을 고갈시키고, 학교교육을 파행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사교육의 역기능으로 들고 있는 점이다. 이는 특히 취학전의 아동이나 초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사교육의 경우에 그 영향이 클 것이다. 학교교육이 주된 역할을 하고, 사교육은 보조적 내지 보충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의미로 된다. 그러나 이는 학교교육이 사교육에 대하여 그 대체가 가능하도록 암기식 위주의 경직되고 보수적인 교육방식을 택하고 있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편향되어 있는 데에 그 근본원인이 있는 것이다. 창의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교육이 주가 된다면 이는 학원교육의 성격상 그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교육의 자율성 보장문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 확보와 학부모의 학습권보장이라는 일견 모순되는 두 목표의 조화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만으로 완전한 학생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실천적 문제와 학교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학습을 할 수 없는가 하는 교육의 권리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입장은 사교육의 자율성 확보와 사교육의 보충적 기능을 인정하되, 사교육의 역기능을 방지하는 데에도 주력하려고 하고 있다. 교육계나 학부모의 입장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만이 사교육의 역기능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교육은 학교교육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분야의 사회교육으로 행하여져야 한다고 보도 있다. 다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입시제도와 교육정책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교육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관점과 현실적 이해관계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어 본래의 기능을 다하여야 하고, 사교육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사회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학교교육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로 학교교육이 입시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전인교육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미흡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팽창된 입시산업은 사교육의 본래적 기능을 왜곡하여 학교교육을 대체하는 데에 이르고 있는 현상을 낳고 있다. 정상적인 학교교육은 사교육 특히 학원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교육제도의 제도적 존재가치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이 전인교육이 아닌 입시교육이라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사교육에 의한 대체성을 내재하게 되는 것이다. 사교육이나 사회교육은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계획되고 수행되는 종합적 체계적 교육은 본질적으로 아닌 것이다. 시설기준과 교사의 자격에서 현격한 차이를 두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결국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는 하나의 선결문제로서 현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공교육분야인 학교교육에 관한 문제로서 교육제도 및 입시제도의 개혁에 관한 문제이고, 학원으로 대표되는 사교육의 분야에 직접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행 교육제도와 입시제도를 전제로 하여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한층 어려운 일에 속할 것이다. 학교교육과 사교육이 서로 대체성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사회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할 부문으로 각종 시설이나 인적 자격에 관하여도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한다. 이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교육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과목에 대하여는 현행법의 규정에도 나타나듯이 과외교습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문제는 일반교과목에 대한 교습 즉 과외학습의 경우이다. 이는 다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그 밖의 수험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학교교육과 중복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그 교습의 대체성 때문에 학교교육의 파행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학원에 의한 과외교습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권의 보장과 문제가 된다. 양자는 다같이 학교교육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성과 보충성의 구별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학업성적의 향상은 곧 입시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적부진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고 이는 곧 학력의 보충과 학교교육의 대체를 구분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문제는 사교육의 역기능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만 있다면, 교육의 기회는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사교육의 역기능은 교육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학교교육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교육비의 과중한 부담과 경제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 등을 들 수가 있다. 사교육은 공교육인 학교교육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수요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사교육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악순환을 일으킬 수가 있다. 곧 학교교육의 파행성을 초래하는 것이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사교육비의 부담은 곧 경제력에 의한 학력우열현상을 초래한다는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

다. 고액과의, 계약과의 등의 불법과의가 곧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는 반강제적인 사교육에의 의존도를 높이는 역기능을 가진다.

사교육은 그 개별성과 탄력성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이 달성할 수 없는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의 자율성 확보와 규제의 완화 내지 철폐는 교육부문의 완전한 자유경쟁을 허용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학교교육이 달성하려고 하는 전인교육이라는 목표를 제도적으로 확고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많은 사교육의 역기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대학 재학생에 의한 무제한적 과외교습을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한 사실상 불법과의를 단속할 수 없고,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교육의 기회와 학습권은 근본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는 과외교습의 경우에는 그 영리성과 집단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더구나 학교교육에 대한 대체성을 가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학원교육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사의 자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시설기준에 의한 관리·감독보다는 교습의 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원의 설립자·운영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관리를 엄격히 하여 영리추구에 편중되어 사회교육적 기능이 전도되는 폐단을 방지하여야만 될 것이다.

학원교육의 질은 교육적 기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인위적인 기준의 강제에 의하여 달성되기보다는 자유경쟁원리에 의한 자발적인 향상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학원교육에 대한 모든 정보의 공개와 전달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학부모의 학습선택권 및 교습대상자의 학습권의 자유로운 행사에 의하여 저절로 사교육기관 내지 교습자가 자유경쟁을 하도록 하여 그 교습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학교교육의 파행성을 막기 위하여 현직 교사등에 의한 과외는 직무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당해 법령에서 규제할 성질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로 과외교습의 허용범위에 관한 문제는 입시제도가 없는 중학교 이하의 학생에 대한 과외교습의 허용문제이다.

입법상 쟁점으로 된 것은 국교생에 대한 과외교습을 양성화하는 문제와 유치

원생에 대한 과외교습의 허용여부이다. 전자는 이미 43%이상이 일반교과목에 대한 과외를 받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문제이고, 후자는 법적 명문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인하여 사실상 과외가 허용되고 있는 현실을 명문으로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금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만연된 과외현실을 교육적으로 합리적인 제도화를 꾀하는 방법론의 문제인데, 국교생의 경우에는 학교교육의 보충문제와 교육환경적 문제 및 영재교육 내지 조기교육의 과열분위기가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개별화교육과 보충교육을 현재의 학교시설과 교사만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학교수업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별도의 인적, 물적 요소의 투입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개개인의 학부모가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교육당국에서 부담할 것인가가 그 핵심이다. 공교육에서 부담할 성질의 것으로 본다면,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정상화를 통하여 바람직한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든가 아니면, 학교내에 사회교육시설을 두는 방식으로 사교육을 공교육화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활용한 보충교육과 개별화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학교교육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은 순전히 학부모의 부담과 재량으로 자율적인 학습권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최소한의 학교교육을 확보하는 선에서 사교육에 대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자유경쟁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교양·감독하는 것은 학부모의 친권에 속하는 것이고, 공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은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교양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 일단의 목표를 두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기회와 시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그 밖의 영역은 학부모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학원의 설립에 관련된 각종 기준과 제한의 문제는 사교육의 자율성 문제와도 관련된 것이고, 사회교육이라는 본질에서도 관계가 된다.

구체적으로 학원의 설립에 관계되는 것으로는 그 설립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여정도, 사실상 제약하고 있는 교습수요기준, 시설기준, 교습자의 자격기준 등을 들 수 있다.

학원의 설립은 종래 인가학원과 등록학원으로 나뉘었으나, 교육부의 입장은 일원화를 표명하고 있으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방침을 바꾸었다. 이에 대한 학

원계의 입장도 등록제로의 일원화를 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특별한 이견은 없다.

학원의 설립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령상의 제한보다도 조례나 사실상의 운영상의 제한이 더 강하다는 데에 있다. 현행법상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교습수요기준과 시설기준의 적정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은 해당지역의 학원 절대수를 제한하고 있고, 시설기준은 최저한도의 설정 수준에 따라 설립 자체가 제약을 받게 된다. 참고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시·도별 학원설립 시설규모는 그 최저한과 최고한도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원의 설립 시설규모도 과도하게 규정되지 아니하도록 법령상으로 최저한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학원교습을 시설기준에 의하여 그 질적 수준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나, 다양한 형태의 학원설립을 사실상 제약하는 것으로 자유경쟁에 의한 질적 향상을 저해하고 속셈학원 등 소규모학원에 의한 불법과외, 변칙과외교습을 양성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학원의 질은 강사의 자격과 질에 의해 달성되어야 할 것이고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함으로써 학원의 설립자와 경영자의 자발적, 경쟁적 노력에 의하여 고양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원재벌에 의한 독과점형태의 학원 운영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입시교습과 함께 보충교습의 형태에 해당하는 중 소규모학원의 존립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상당한 부조리를 양산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 발생되고 있다.

동일계 학원간의 설립상 거리제한인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은 학원단체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원브로커에 의하여 학원등록·인가증의 전매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까지 성행하는 현상은 교습수요기준에 의한 등록과 인가의 사실상 제한에 기인한다. 사교육의 질적 수준확보는 자본의 경쟁이 아닌 교습수준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에 의존되어야 바람직하다. 이는 또한 시설기준의 적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은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의 종합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므로 물적 요소의 현저한 간격 내지 격차는 결국 대형 자본에 의한 독·과점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시설기준은 사설교습소가 위치한 지역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교습수준의 질적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동일한 교습과정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최저한의

시설기준은 최소한의 교습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동일한 교습과정은 시설기준 역시 통일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므로 전적으로 조례에 위임되어 현재 처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학교시설·설비기준령처럼 교습과정과 교습수강자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필수적 설비를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교습자의 자격기준은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가 하는 문제로 된다.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일반적인 사회교육 담당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자율에 맡길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또한 이를 교습대상자에 따라서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학원, 고등학교학생 이하 층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교습학원, 과외교습학원을 다시 초등, 중등, 고등으로 구분할 것인가, 교습과정별로 달리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과외교습도 사회교육의 일종인 점에서 법령에서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을 학원에 반드시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에 대한 관계에서 그 보충성 내지 대체성을 인정한다면, 과외학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는 교사자격자를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교직과목의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현재 일반교과목 교습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로서 교습과목 내지 유사과목 전공자 또는 경력자, 교육연수기관 이수자, 사회교육기관 이수자, 대학교의 재학생이 해당된다. 이는 자격기준이 일정하지 않음을 뜻한다. 예능, 기술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자로서 당해 교습과목 내지 유사과목을 전공한 자, 국가기술자격자, 당해부문 경력자가 교습자격을 가진다. 학원의 경우와 과외교습소의 경우는 전자의 자격기준을 더 엄격히 하고 있고, 개인과외교습의 경우는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교습자의 자격기준은 전혀 교육적 차원에서 원칙과 일관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학원, 과외교습소, 개인과외가 교습자의 자격기준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자격기준에 의해 법령으로 교습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여러가지 교육외적인 정책적 이유에 기인하기는 하지만 교육상의 목적이 현실적 이유로 부차적인 것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전적으로 학부모나 학생의 선택에 의존되고 있다. 법령으로 일정한 수준의 교육적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습자의 자격기준을 통일성있게 규율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교습자의 자격기준은 자율화하여 자유경쟁원리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교습자의 전공, 학력, 경력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며,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은폐한 경우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넷째, 학원의 관리, 감독

학원의 감독은 결국 학원의 설립·운영자에 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의 실시, 불법 내지 변태운영에 관한 벌칙의 강화, 현황통계등의 각종 보고의무 강화를 통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과 범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학원관련단체의 자율성 확보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 바, 사회교육분야의 학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지도·감독권을 학원관련단체에게 이양하여야 할 것이다. 학원간의 자유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제도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원교육에 대한 자유경쟁 체제하에 있는 외국의 학원들이 교육개방을 통하여 국내에 상륙할 경우 이에 대한 국제경쟁력의 확보도 결국은 치열한 자유경쟁을 통하여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율화로 연결된다.

불법 내지 변태운영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시행하고, 효과없는 규정 예컨대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의 기피·방해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사법경찰권의 인정을 법령에 반영하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주의, 경고 또는 효과가 없는 짧은 기간의 휴원조치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의 방해나 기피에 대해 과태료처분이 효과가 없다고 본다면 이를 현실적인 기준으로 낮추거나 다양화를 인정하여 대형입시학원외에 중·소형 입시학원의 설립을 인정하고, 국가기술자격 등과 관련된 기술학원등의 필요불가결한 분야를 제외한 기타 분야의 학원 신규등록은 원칙적으로 자유화하여야 할 것이다.

학원교육도 사회교육의 일부인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율경쟁과 자율규제에 의한 합리화를 기대하는 것이 원론적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본질에 벗어난 학원교육에 감독과 관리는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교육 일반과 관련하여 법체계상 사회교육법의 특별법 형식으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어 있으나, 종래의 사회교육이 계몽형 사회교육에 주안을 두고 추진되어 왔으나, 공교육에 대한 신지식·신직업을 주내

용으로 하는 사회교육으로 그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실비에 의한 사회교육은 적정 보수로서 학습비를 인정하지 않고는 현재와 같은 사회교육강좌로서의 각종 문화센터나 교양강좌가 불법으로 등록이나 신고되지 않고 운영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없고, 이를 진흥 내지 육성할 수도 없다는 문제가 내재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각종 언론기관이나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나 교양강좌가 10인 이상 30일을 넘는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나, 소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있고, 실비외에 수강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운영상 이득이 없다고 보아 사회교육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면서 운영되고 있으나, 그 사회적 역할이 긍정적인 까닭에 단속이나 규제를 하지 않고 다만 등록과 신고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적극적인 사회교육시설로의 참여나 확대가 기피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사회교육에 대한 진흥책을 사회봉사나 국가의 교육임무를 봉사적 차원에서 기대하기에는 사회교육의 요구된 교육내용이 현대에 들어서서는 전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좁은 의미의 사회교육과 학원교육이 서로 그 질적인 내용에 있어 접근 내지 동일화과정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사회교육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와 함께 학원교육도 사회교육으로 흡수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사회교육법과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평생교육의무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교육은 최대한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며 이를 진흥하고 조성하는 각도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됨으로써 가장 합리적으로 완수될 것이다.

③ 인가제 → 등록제

현행: 등록학원(제5조제1항), 인가학원(제5조제2항)

4) 학원의 단위시설기준: 법 제3조, 시행령 제4조

① - '다수인'(법 제2조제1항)의 범위를 교습과목에 따라 인원수를 따로 설정할 수 있게 함.

- 시설기준을 조례로 정할 경우 과도하게 규정하지 않도록 함(상한선 설정)

② - (없음)

- 단위시설별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함

- 교습과정별 시설규모는 시도조례에 위임

③ 현행으로 환원. 상한의 규정은 없음

5) 환경(설립제한등의): 법 제4조제2항, 제3항

① - 유해업소와의 거리는 현행대로 함

- 위험물취급소, 소음분진발생업소는 상당한 거리를 두도록 하고, 설립제한을 명규화

② (없음)

③ (생략)

6) 교습수요기준: 시행령 제13조제6항, 제18조제1항, 제2항

① 법률에 근거 명시. 지역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함

② (없음)

③ 현행 시행령 제13조제6항

7) 수강료의 기준: 법 제12조제2항

① 주무관청에서 정하여 학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② - 주무관청의 수강료기준설정권을 삭제

- 수강료계시 의무화
- 교육감이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③ - 주무관청의 설정권 삭제
 - 교육감의 조정명령권 신설

8) 학원의 관리

- ① 자율성 신장 지원, 각종 보고의무 강화(실태파악을 위함)
- ② (없음)
- ③ (생략)

9) 권한의 위탁

- ① 학원관련단체에 권한 위탁: 활성화, 윤리단체로서의 자율기능 강화
- ② (없음)
- ③ (생략)

10) 감독·처분 관련: 법 제16조제2항(서면통지)

- ① (없음)
- ② - 등록취소등의 처분시 상대방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학원설립·운영자의 책무규정, 결격조항 신설
 - 교육감이 학원의 설립·운영자, 강사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계획의 수립, 시행
 - 벌칙 강화
- ③ - 설립·운영자의 결격조항 신설
 - 운영자등의 연수실시
 - 벌칙 강화

3. 국정개발국민회의 교육개발위원회 개정건의안

1) 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 자

대학생(대학원생)의 교습자격에는 동의하나 ①동일시간, 동일장소에서의 교습인원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②여러명이 연합하여 학원형태를 취하는 것은 금해야 된다고 사료됨. ③신고토록 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건의사유: 학원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2) 시설규모

시·도조례로 지역사정에 맞게 시설규모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교습과정별로 시설규모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지역별로 지역사정에 맞는 학원시설만을 총괄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본다.

(건의사유: 교습과정별로 시설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해 보면, 1. 특정교습과정을 특정계층(대자본가에게만 독점시키고 있고, 2. 이는 지나치게 대형화되어 학원재벌이라는 사회적 비난과 함께 교통체증,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교육적 필요성으로 보아도 과정별로 시설기준이 달라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자본능력보다는 교육능력과 교육의지를 중시하는 시설기준이 타당하다고 보며, 일정 이상의 교육시설, 설비 이외에는 교육수요자의 선택안목에 맡기어 학원설립자가 이에 적응해 가는 선의의 경쟁시대로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학원강사

학원강사의 학력, 교육경력사항 게시의무에 대하여는 근원적으로 동의하며, 학원관계자들의 연수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시대에 필요한 국가, 과학, 창조등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사명의식을 보다 강도 높게 지도해야 한다.

학원강사의 자격요건으로는 ①일정학력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②부전공자에

게는 관계있는 자격증으로 대치하게 하며(특수분야 제외), ③교육학 미필자에게는 연수과정을 마련, 수료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의사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조차 전공자만을 강사자격자로 정하는 것보다는 초·중등교육에서 더욱 필요한 교육학 등을 교육받게 하고, 일정한 관계자격증으로 대신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정부가 앞장서 연수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인·허가 교습과정 및 교습과목

학원(교습소 제외)의 인·허가 교습과정 및 교습과목은 통폐합 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①인가교습과정은 입시교육학원, 어학교육학원, 예능교육학원, 기술교육학원, 문화교육학원, 사무교육학원, 초·중등보충교육학원, 독서교육학원 등으로 구분하고, ②수백개로 분류되어 있는 인과목은 인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인가교습과정내에서의 유관성, 환경성(시설,설비), 자격성(강사자격)만을 행정지도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5) 종합

관과 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학원관계법의 90%가 인가 시설(설비)기준, 학원과의 형평을 잃은 대학생 과외, 강사자격, 인허가교습과정 및 과목에 있음에 과감한 개혁(개정)조치로 현재의 90%가 지키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는 법의 기능을 누구나 지킬 수 있고 지켜야 되는 법의 기능으로 전환시켜 현행법의 모순으로 인한 지도, 감독의 어려움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과감하게 지도, 감독권(특별사항 제외)을 유관단체(학원연합회등)에 이양하여 업무과다로 인한 지도, 감독 불능상태를 면해야 한다.

4. 학원연합회 속셈분과위원회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개정안)

제3조(시설기준) ①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른 교습과정별, 지역별 증치기준(최저기준 20평을 포함한다)은 이를 특별시, 직할시, 도(이하 '시·도'라고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사유: 시·도조례로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최저기준은 주식회사 설립자본금 5,000만원 해당금액이며 20평임)

제5조(학원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등록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사유: 학원설립시 등록사항으로 일원화함)

제6조(조건부 설립등록) ①교육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과외교습) ①현 행

1. 현 행

2. 학원에서 고등학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의 입학이나 이를 위한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받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수험준비생에게 교습하거나 학원에서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과목을 국민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재학생에게 일반과목의 학습을 목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다.

(개정사유: 국민학교, 중학교학생의 과외교습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과목에 한하여 허용하게 함)

제11조(강사 등) ①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사유: 학원강사 인적사항 비치로 학원이용자에게 편의제공. 교육감의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양성 및 연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권한에 대한 근거 명시)

5.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90년 기준 우리나라 사교육비 통계

- 사교육비: 9조4천2백71억원
- 공교육비: 8조6천9백72억원 (사교육비 대비 7천2백99억원 적음)
- 공교육비 중 사부담: 3조3천8백67억원(공교육비의 38.9%)
- 전체교육비의 70% 이상을 학부모가 부담

6. 서울시 교육청 학원수강실태조사

(92.6월, 서울시내 27개 국민학교 7천8백22명 대상)

- 학원수강자: 5천4백65명(전체의 70%) - 피아노교습소 및 속셈·영어학원 등
 - 1개 학원수강자: 3천8백59명(49.3%)
 - 2개 학원수강자: 1천4백19명(18.1%)
 - 3개 학원수강자: 1백63명(2%)
 - 4개 이상 수강자: 24명(0.3%)
- * 가정교사, 방문강습은 제외

7. 학원연합회 국민학생 과외교습 실태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서울시내 생활수준을 고려한 3개국교의 학부모 862명
- 조사기간: '94. 4. 8 ~ 4. 20

○ 표집방법 : 각 학교별 1~6학년에서 1학급씩 무작위 추출

지 역	국민학교명	대상 학부모수	응답 학부모수	응답비율 (%)
관 악 구	“ㄴ”국민학교	252 명	241 명	95.6
은 평 구	“ㅇ”국민학교	314 명	299 명	95.2
강 남 구	“ㄱ”국민학교	322 명	322 명	100.0
합 계		888 명	862 명	97.1

2) 맞벌이부부 현황

구 분	응답 학부모수	맞 벌 이		비 맞 벌 이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ㄴ”국민학교	241 명	106 명	44.0	135 명	56.0
“ㅇ”국민학교	299 명	146 명	48.8	153 명	51.2
“ㄱ”국민학교	322 명	91 명	28.3	231 명	71.7
합 계	862 명	343 명	39.8	519 명	60.2

3) 자녀가 현재 받고 있는 학원수강 및 과외 교습소

구 분	전혀받지 않고있다		1 개		2 개		3 개		4개 이상		1개 이상 받고있다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ㄴ”국교	47	19.5	116	48.1	55	22.8	20	8.3	3	1.3	194	80.5
“ㅇ”국교	57	19.1	133	44.5	78	26.1	30	10.0	1	0.3	242	80.9
“ㄱ”국교	7	2.2	15	4.6	98	30.4	108	33.6	94	29.2	315	97.8
합 계	111	12.9	264	30.6	231	26.8	158	18.3	98	11.4	751	87.1

4)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반교과(국어, 산수등)에 대하여 학교밖에서 과외 여부

구 분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합 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ㄴ”국교	119	49.4	122	50.6	241	100
“ㅇ”국교	141	47.2	158	52.8	299	100
“ㄱ”국교	112	34.8	210	65.2	322	100
합 계	372	43.2	490	56.8	862	100

5)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반교과(국어, 산수등)에 대한 과외를 받는 경우 과외를 받는 유형

구 분	속셈학원		웅변학원		주산학원		속셈,웅변 주산외		개인지도		합 계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ㄴ”국교	76	63.9	7	5.9	2	1.7	15	12.6	19	15.9	119	110
“ㅇ”국교	82	48.5	4	2.4	-	-	35	20.7	14	28.4	169	100
“ㄱ”국교	26	23.2	-	-	-	-	17	15.2	69	61.6	112	100
합 계	184	46.0	11	2.8	2	0.5	67	16.7	136	34.0	400	100

※ “ㅇ”국교의 169명이 표4의 141명과 다른 사유는 1인이 2개이상 받는 경우가 포함

※ 일반교과에 대한 과외교습은 저소득층은 속셈학원, 고소득층은 개인지도를 선호

6) 자녀를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교습을 받게 하는 가장 주된 이유

구 분	응답 학부모 수 (명)					
	“ㄴ”국교		“ㅇ”국교		“ㄱ”국교	
학교공부를 잘 하지만 더욱 잘 하도록 하기 위하여	26	13.4%	43	16.2%	63	18.8%
학교에서는 개별지도가 부족하여 아동 혼자서는 공부를 잘 못하기 때문에(방과후 탁아기능 포함)	85	43.8%	112	42.3%	56	16.7%
상급학교 진학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15	7.7%	21	7.9%	26	7.8%
학원의 교육내용이 학교의 교육내용 보다 낫다고 판단되어서	1	0.5%	2	0.8%	-	-
여가 및 취미활동지도, 인성지도, 사회성함양등	67	34.6%	87	32.8%	190	56.7%
합 계	194	100%	265	100%	335	100%

※ 중·저소득층은 일반교과의 보충지도, 고소득층은 예능·회화등 일반교과 이외의 과목을 위한 과외요구가 높음.

8. 국민학교 학생 학원수강 실태

1) 조사자료 - 한국어린이보호회 '92조사보고서(서울, 대전 표본조사)

2) 조사내용

○ 우리나라 국민학교 아동의 24%~33%정도가 방과후 몇시간을 성인의 보호 없이 지내고 있음.

○ 국민학생 학원 수강실태

구 분	학 원 수 강	학 원 미 수강
3 학 년	73.4 %	26.6 %
6 학 년	65.4 %	34.6 %

9. 전국 속셈학원 운영실태조사 결과(학원연합회)

1) 학원수, 정원, 현원

학원수	정원 (명)	현원 (명)	비고
13,140	2,388,812	818,708	34.3 %

※ 속셈학원은 13,140개소로 52,586개소의 24.9%임.

2) 시설규모별 학원수 및 평균

20평 이하 (개소)	21평~50평 (개소)	51평~100평 (개소)	101평~ 200평	합계 (개소)	평균면적 (평)
4,278	8,354	506	2	13,140	28.1

※ 속셈학원의 시설규모는 50평 이하가 96%임.

3) 건물소유형태별 학원수

소유 형태 (학원수)		
자 가	임 대	합 계
678 (5.2%)	12,462(94.8%)	13,140

4) 학원장의 학력별 현황

중졸이하		고 졸		전문대졸		대 졸		대학원졸		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150	1.14	3,084	23.47	2,372	18.05	7,103	54.06	431	3.28	13,140

※ 속셈학원 설립자의 75%이상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임.

5) 강사의 학력별 현황

중졸이하		고 졸		전문대졸		대 졸		대학원졸		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1		833	4.01	6,715	32.3	13,067	62.86	176	0.83	20,789

※ 속셈학원 강사의 96%이상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임.

6) 강사의 교원자격증 소지 현황

교원자격증 소지자		교원자격증 비소지자		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13,951	67.11	6,838	32.89	20,789

7) 수강료별 학원수

3만원 미만	3만원 이상 4만원 미만	4만원 이상 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	7만원 이상	평균 (원)
2,102	7,402	3,160	465	11	35,303

※ 속셈학원의 수강료는 96%이상이 5만원 미만임.

10. 맞벌이 부부 현황

1) 조사자료

- 1993년 노동통계연감(노동부) : '92년 통계
- 1993년 경제활동연구연보(통계청) : '93년 통계

2) 조사내용

구 분	1992	1993
주 부	1천 2백만명	1천 2백 6십만명
취 업 주 부	5백 62만명 (47%)	5백 75만명 (45.6%)
배우자 있는 취업주부	4백 66만 3천명 (38.8%)	4백 80만 7천명 (38.1%)
맞벌이 부부 (추정)	3백만 ~ 4백만쌍	3백만 ~ 4백만쌍

※ 맞벌이 부부가 전체 가구의 약 40%라고 볼 때 아동의 약 30~40%가 방과후 미보호 상태라고 볼 수 있음.

11. 재학생 학원수강 허용 현황

1) 방학중 : 모든 시·도 가능

2) 학기중 :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 결정

○ 재학생의 학기중 학원수강 허용 현황

('94.6 현재)

시·도	허용 시기	대 상	비 고
서울	'92. 9. 1	국·중·고	
부산	'92. 5. 1	중·고	
대구	'93. 3. 1	국·중·고	
인천	'93. 3. 1	국·중·고	
광주	'93. 4.15	중	
	'93. 9. 1	국·고	
대전	'92.12. 1	중	
	'92. 7. 1	고	
경기	'93. 3. 1	국·중·고	
강원	'93. 9. 1	중	
	'93. 9. 8	고	

시·도	허용 시기	대 상	비 고
충 북	'92. 9. 1	중	
	'93. 9. 1	고	
충 남	'93. 9. 1	중·고	
전 북	'93. 5.17	중	
	'93. 8.20	고	
전 남	'94. 3.10	국·중·고	
경 북	'93. 5.19	국·중·고	
경 남	'93. 6. 1	고	
	'93. 9. 1	중	
제 주	'93. 5. 1	중	
	'93. 3. 1	고	

12. 시·도별 학원설립 시설규모

(현행 시·도조례 기준)

구분	입 시	검정고시	어 학	성인고시	독서실	기 술	예 능	가 정	사 무
서울	990m ² - 2,970m ²	660m ² - 2,970m ²	330m ² - 2,970m ²	330m ² - 2,970m ²	132m ² - 2,970m ²	99m ² - 2,970m ²	99m ² - 990m ²	99m ² - 990m ²	99m ² - 990m ²
부산	660m ² - 2,640m ²		198m ² - 1,980m ²		132m ² - 660m ²	66m ² 이상 (단, 속셈학원은 99m ² 이상)			
대구	330m ² - 2,640m ²	165m ² 이상	198m ² - 1,650m ²	165m ² 이상	198m ² - 990m ²				82.5m ² 이상 (속셈 과정이 포함된 학원포 함)
인천	660m ² - 1,980m ²	330m ² - 1,980m ²	198m ² - 1,980m ²	198m ² - 1,980m ²	132m ² - 396m ²	99m ² - 990m ²			

구분	입 시	검정고시	어 학	성인고시	독서실	기 술	예 능	가 정	사 무
광주	330m ² - 2,645m ²	198m ² - 1,984m ²	198m ² - 992m ²	198m ² - 1,984m ²	198m ² - 1,323m ²	99m ² - 2,645m ²			
대전	330m ² - 2,645m ²	165m ² - 2,640m ²	165m ² - 2,640m ²	165m ² - 2,640m ²	99m ² - 660m ²	99m ² 이상(강의실만 들 수 있는 교습과정) 66m ² 이상(강의실과 실험실을 두어야 하는 교습과정)			
경기	330m ² - 2,970m ²	264m ² - 2,970m ²	198m ² - 2,970m ²	330m ² - 2,970m ²	99m ² - 990m ²	99m ² - 2,970m ²	66m ² - 990m ²	66m ² - 990m ²	66m ² - 990m ²
강원	66m ² - 이상	66m ² - 이상	66m ² - 이상	66m ² - 이상	66m ² - 이상	66m ² - 이상	66m ² - 이상	66m ² - 이상	66m ² - 이상
충북	198m ² - 1,980m ²	198m ² - 1,980m ²	198m ² - 1,320m ²	198m ² - 1,320m ²	165m ² - 660m ²	99m ² 이상 (강의실만 필요한 학원)			
충남	132m ² - 이상	99m ² - 이상	99m ² - 이상	99m ² - 이상	132m ² - 이상	66m ² 이상			
전북	165m ² - 이상	99m ² - 이상	99m ² - 이상	66m ² - 이상	99m ² - 이상	66m ² 이상			
전남	198m ² - 이상	198m ² - 이상	198m ² - 이상	198m ² - 이상	66m ² - 이상	66m ² 이상			
경북	132m ² - 이상	132m ² - 이상	132m ² - 이상	132m ² - 이상	99m ² - 이상	66m ² 이상			
경남	165m ² - 이상	165m ² - 이상	99m ² - 이상	165m ² - 이상	132m ² - 이상	49.5m ² 이상			
제주	99m ² - 이상	99m ² - 이상	99m ² - 이상	99m ² - 이상	66m ² - 이상	66m ² 이상			

13. 외국의 학원 운영 실태

1) 조사개요

○ 조사대상국 : 13개국

미국(휴스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영국,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호주(시드니),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 조사기간 : '93.12.6 ~ '94.2.22

○ 조사방법 : 해외주재교육관, 한국교육원장, 한국학교장 등을 통해 자료수집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2) 외국의 학원 운영실태

관련사항	운 영 실 태
설립절차	<p>○ 조사대상국가 대부분이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하고 있음.</p> <p><특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 구청에 사업자 등록 - 일본의 塾 : 세무서에 설립 신고 - 뉴질랜드 : 등록의무 없음
시설기준	<p>○ 대부분 일반적 시설기준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Texas) : 학원시설은 잘 적용되어야하며 충분한 양과 질을 구비해야 함. <p>○ 프랑스, 일본의 塾, 뉴질랜드, 스위스 : 시설기준 없음</p>
근거법규	<p>○ 교육법속에 일부 조항으로 존치 : 미국(Texas), 싱가포르, 영국, 홍콩 등</p> <p>○ 캐나다 : 시설직업학원법</p> <p>○ 대만 : 단기교습단설립 및 관리규칙</p> <p>○ 일본의 塾 : 세법</p>
학원장 자격	<p>○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 일반적인 기준(예: 재정능력과 인격을 갖춘 자)</p> <p>○ 미국(Texas), 호주, 대만 : 일정한 학력과 경력(예: 대학졸업자로서의 재정과 행정력을 갖춘 자)</p> <p>○ 프랑스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p> <p>○ 뉴질랜드, 스위스, 일본의 塾, 미국(Illinois) : 자격기준 없음</p>

관련사항	운 영 실 태
강사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과 경력, 자격증 소지자등 명시 ○ 뉴질랜드, 일본의 塾 : 자격제한 없음
수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의 입시학원 수강료 기준은 정부가 정함.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I. 1994년 정부입법예정 149개 법안관련 입법의견

1. 1994년 정부입법예정 149개 법안관련 입법의견목록

(1994.6.11.~1994.8.10)

◎ 재무부	66
○ 보험업법 개정의견	
○ 토지초과이득세관련 입법의견	
◎ 교육부	68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농림수산부	68
○ 농지법안 관련 입법의견	
◎ 노동부	69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견	
◎ 총무처	70
○ 국가공무원법 개정의견	
◎ 환경처	70
○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개정의견	
◎ 국가보훈처	71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국회계류중인법안	72
○ 소비자보호법 개정의견	

2. 1994년 정부입법예정 149개 법안관련 입법의견요지

(1994.6.11.~1994.8.10)

◎ 재무부

○ 보험업법 개정의견

- ①금리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보험사의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적배당 상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업자가 보험종류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분리계정에 의한 실적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보험사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지급 여력에 대한 경영지도 기준을 설정하여 현재의 책임준비금외에 별도로 지급 여력을 쌓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②보험사의 점포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신고만으로 점포를 설치하거나 이전·폐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험대리점에 대한 허가제도 등록제로 바꾸기로 함 ③이와함께 주주자격에 관한 소급제한조항을 삭제, 보험사업 허가당시 주주자격제한을 받은 대기업집단이라도 대기업집단 순위변동이나 허가기준의 변경으로 현재 주주자격을 가질 수 있으면 이를 인정하며, 이밖에 「보험업법」상의 벌칙조항을 강화해 벌금 및 과태료 수준을 지금보다 4~5배로 올리기로 하고, ④보험정보의 분석능력이 부족한 가입 희망자들에게 보험회사 및 상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스스로 보험을 들 회사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감독원장에게 각종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 조사연구·재산상황·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 결과,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재무부).

: 한국 94.7.20.,12면; 경향 94.7.20.,7면; 서울 94.7.20.,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31면) 참조

○ 토지초과이득세관련 입법의견

- 앞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등 지가산정 관련법규를 정비해 지가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며 현재 초과이득의 50%를 단일세

율로 과세하던 것을 이득액에 따라 누진과세로 바꾸고 세율도 전체적으로 낮출 예정이며 차제에 논란이 많았던 유휴지 판정기준도 바꾸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양도세와의 이중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양도세 과세때 공제하는 토초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김용진 재무부차관).

- 토지 투기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위해 토지 보유에 따른 과세는 부담을 늘리되 토지를 사고 팔 때 관련 비용은 줄여야 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조세체계는 최고 세율이 60%로 너무 높아 오히려 토지공급을 제한해 왔으므로 상속세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50%수준까지 낮춰야 함(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 소장).
- 기본적으로 토지보유단계에서 지가상승분에 대한 과세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므로 과표를 하루빨리 공시지가로 전환해 토지 과다소유자의 세부담을 대폭 늘리고 양도소득세 적용범위도 확대함. 현재 비과세·감면조항을 악용해 범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들은 철저히 차단해야 함(이태일 국토개발연구원 토지연구실장).
-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강화를 비롯, 토지거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재산세제의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되고 토지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는 높은 법정세율에도 불구하고 과표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아 실효세율이 0.06~0.08%에 불과한 실정임. 부동산보유에 따른 비용이 너무 낮은 경우 투기성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토지보유세제를 강화하고 양도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함(이병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종합토지세 강화가 가장 정통적인 대응방법이므로 우선 과세표준이 현실화 돼야 하고 과표상승이 조세저항을 유발할 염려가 없지 않지만 적어도 실거래 가격의 50% 수준까지는 조속히 높여갈 필요가 있음. 투기목적 토지보유를 억제하려면 토지를 취득한 때 가격과 개발완료때 가격차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함(이윤호 럭키금성 경제연구소 소장).
- 토지초과이득세도 따지고 보면 양도소득세의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긴요함. 업무용토지, 1가구1주택 조항을 이용한 부유층과 일부 기업의 빈번한 토지거래가 부동산투기의 전형적 패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을 완전철폐하는게 바람직하나 선의의 서민 피해도 생길 수 있는만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보완조치가 병행돼야 하고 주식양도차익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해서 종합토지세 실

효세율을 높이면 토지투기나 과잉보유 유인을 없애고 지가하락을 유도할 수 있음(이필상 고려대교수).

- 토초세가 조세부담의 형평, 지가안정,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종토세와 양도소득세를 개선함과 동시에 토초세는 폐지해야 함(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조세·재정소위).

- 토세세법 자체는 존속시키되 현제가 지적한 사항들은 모두 개정하기로 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대통령령에 전면 위임되어 있는 과세표준(공시지가) 산정방식과 기준을 법에 명시하되 조세마찰을 없애기 위해 과세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50%의 단일세율로 되어 있는 토초세율 체계를 과표가 커짐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바꾸되 평균세율은 20~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임(재무부).

: 조선 94.7.30.,3면; 서울 94.7.30.,1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87~88면) · 제13호(77면) 참조

◎ 교육부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을 개정의견

- 일반교과목까지 국교생 과외교습을 허용하게 되면 현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안할 때 주요 교육기능이 사교육으로 빠져나가는 학교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임. 현행 입시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경쟁입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국교단계부터의 과외열풍은 단순히 계층간의 위화감조성을 넘어서 학교교육의 위기를 부를 수 있음(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위원장).

: 한겨레 94.7.29.,18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29~30면) · 제7호(63면) · 제10호(83~84면) · 제11호(86면) · 제12호(82~83면) · 제13호(67~68면) · 제94-1호(62면)

◎ 농림수산부

○ 농지법안 관련 입법의견

- 농지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기 위해 「농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지거래의 완전자유화는 어려운 점이 있음(이영덕 국무총리).

- 국내시장의 개방이 한층 강화되고 농업조차 예외없이 국제경쟁의 전장에 나서야 한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나 비교우위만으로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것 못지 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내부경쟁력으로 농사지을 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농지 소유가 가능할 때, 농업자본의 역할을 대행할 도시자본의 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함. 법안이 길을 터준 농어촌 산업지역이 아니라도, 농지전용이나 제도변경까지를 고려한 투기의 소지는 널리 열려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자본에 밀려나는 가족농 대책, 즉 농촌의 빈부계층화와 이농대책으로 농민을 단순히 농업 노동자로 만들면서, 도시에서 침투한 자본 위주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농업은 살지 모르나 농민은 죽게 됨(한겨레신문 사설).
- 일부에서는 '농어민이 살 수 있는 농어촌이 아닌 비농민에 의한 농어촌발전대책'으로 농업의 축소, 농촌의 도시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발전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지소유의 이용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으나 투기방지등에 있어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소지가 있음(국민일보 해설).
-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의 일환으로 비농업진흥지역에 제조업, 유통업, 관광업등 2,3차 산업을 유치하여 농촌을 도·농복합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비진흥지역농지의 전용과 처분을 사실상 지방정부나 개인에게 완전히 맡겨버리고 있는데, 이는 각급 행정수준에서 합리적 지역경제 개발을 세우고 비진흥지역 농지의 이용도 이에 따라 이뤄야 할 것임(한국일보 사설).

: 동아 94.7.8.,6면; 한겨레 94.7.15.,3면; 국민 94.6.14.,6면; 한국 94.7.15.,3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1호(91~93면) 참조

◎ 노동부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견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졸 여사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명시하는 기업체의 악질적인 행위에 대하여 고작 2백5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니, 이것이 기업에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전혀 안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므로 조속히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차별규정을 강화해야 하며 해당기업의 물품구매 거부운동 등을 벌이거나 언론에서 문제로 삼는등의 조치가 필요함(배금자 변호사).

: 세계 94.6.14.,5면

◎ 총무처

○ 국가공무원법 개정의견

- 기존에 여성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60일간의 유급 출산휴가규정에 더해 1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남녀공무원들이 모두 1년미만의 육아휴직기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부모와 자녀, 배우자의 병간호를 위해서 1년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휴직제'를 도입하되, 육아휴직이나 가사휴직은 모두 무급으로 함(민자당과 총무처).
- 여성들에게만 육아휴직을 줄 경우 기업이 여성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남녀가 모두 육아휴직을 받게되면 여성취업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책임이 모두 여성에게만 전가되어온 사회의식도 바뀔 것임(김엘립 여성개발원연구원).
- 중앙행정기관 중간관리층을 보강,국가정책수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사적체 완화를 위해 현재 4급으로만 보임하도록 되어있는 중앙부처 과장에 3급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기로 함(당정).

: 동아 94.7.29.,16면; 국민 94.7.28.,2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3호(88면) 참조

◎ 환경처

○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개정의견

- 그동안 생산·제조분야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넘을 때만 환경개선 부담금을 물려왔으나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이를 부과하기로 하되, 기업들의 재정부담을 고려, 당분간은 대개업들에만 이를 부과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부과를 유보할 방침임. 이와함께 현재 시 이상 지역과 관광지역·자연보전지역등으로 되어 있는 부과대상지

역도 앞으로는 군 이하 지역까지 확대시켜 현재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군지역 골프장등도 포함시킬 방침임(환경처).

: 서울 94.6.11.,21면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1~2점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 시험에서 총점의 5~3%까지 가산해주는
것은 군복무 의무가 없는 여성들에게 크게 불리한 성차별적 조항임(조택 이화
여대 행정학과 교수).
- 국가방위에 대한 보상으로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경쟁의 기회균등
이라는 또다른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제대군인은 채용시험 때 가산
점 특혜와 함께 채용 뒤 호봉산정에서 군경력 인정 등으로 이중혜택을 받게 되
어 여성뿐 아니라 여러 이유로 군대를 못 간 사람들은 이중으로 불합리하게 되
어 있음(김호태 경북 안동시 태화동).
- 우리나라가 모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 남녀차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복무를 해야 하는 징병제 아래서
는 군복무로 취업을 위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제대군인들에게 당연히
가산점 등 보상을 해줘야 하고 채용대상이 해마다 1천명 정도여서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성이 없음(김의환 국가
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예우'를 해주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가산점
을 줌으로써 다른 취업지망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다른 혜택의 방법을
찾아야 온당함. 군대는 효과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고 병과에
따라서는 취업시 호봉 혜택 외에 군경력을 인정하는 별도의 혜택이 주어지기
도 하고 채용시의 가산점 혜택은 군대의 경험을 무용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군복무자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일 수도 있음(한겨레신문 사설).

: 한겨레 94.7.17.,8면; 한겨레 94.7.23.,3면

◎ 국회계류중인 법안

○ 소비자보호법 개정의견

- 소비자단체 공표권을 확대하는 외에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는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공표할 수 있게 되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엔 정부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발표해야 함(국회 행정경제위원회).
- 신뢰성이 낮은 시험결과가 공표될 경우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어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대신, 시행령상 공인검사기관의 범위를 정할 때는 가급적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함(경제기획원).
- 소비자보호원의 역할과 권한을 오히려 확대, 민간 소비자운동을 계속 관주도로 통제하려는 퇴행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소비자보호원의 방대한 기능을 대폭 축소, 정책연구기능에 전념하도록 해야 함(이용철 변호사, 시민권익보호변호인단 운영위원).
- 소비자보호원에서 사업자 고발처리와 분쟁조정을 동시에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고발처리는 소비자 단체에 맡기고, 분쟁조정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이성환 변호사).
-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서 정부 주도가 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법」이 마련되어야 함(이덕승 서울 YMCA 시민사회 개발부장).

: 동아 94.7.13.,13면; 세계 94.7.13.11면; 조선 94.7.16.,18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0~61면) · 제4호(32~33면) · 제94-1호(68면)

: 동아 94.7.13.,13면

II. 최근입법의견 동향

1. 최근입법의견목록

(1994.6.11. ~ 1994.8.10)

- ◎ 憲政 76
 -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 ◎ 統一·外交·國防 76
 - 고엽제후유증환자진료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국립묘지령 개정의견
 - 통일대비관련 입법의견

- ◎ 內務·地方行政 77
 - 3개도농통합형대시설치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경륜·경정법관련 입법의견
 - 정부조달및계약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 社會·教育·文化 78
 - 고용보험법시행령(가칭) 제정의견
 - 교육법시행령 개정의견
 - 노동법 개정의견
 - 방송법 개정의견
 - 사회교육법 개정의견
 - 사회복지관련 입법의견
 -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학년별 속진제관련 입법의견
 - 한자·한문교육관련 입법의견

◎ 産業 · 經濟 82

- UR관련 입법의견
- 경쟁제한관련 입법의견
- 공업발전법 개정의견
- 국제경쟁력강화관련 입법의견
- 기업활동규제완화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안관련 입법의견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관련 입법의견
- 산업은행법 및 주택은행법 개정의견
- 상표법 개정의견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의견
- 예금자보험제관련 입법의견
- 은행법 개정의견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개정의견
- 지방세법 개정의견

◎ 農林 · 水産 90

- 농어촌발전관련 입법의견
- 농수산물 유통개혁관련 입법의견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建設 92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의견
- 국토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의견
- 전문건설업 기술자 의무고용관련 입법의견

◎ 科學技術 · 交通 · 遞信	94
○ 과학기술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기상업무법등 개정의견	
◎ 環境 · 保健	94
○ 음용수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 지하수법 개정의견	
○ 환경관련법 개정의견	
◎ 法院 · 法務	96
○ 법무행정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인권관련 입법의견	
○ 입양특례법 개정의견	

2. 최근입법의견요지

(1994.6.11. ~ 1994.8.10)

◎ 憲政

○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 현행 「정치자금법」상 4대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내년도 정당에 대한 유권자 1인기준 국고보조금이 3천2백만원꼴로 평시(8백원)보다 4배이상 높게 지원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 지원규모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을 외면할 수 없음(민자당).
- 국고보조금만을 문제삼는 것은 야당의 정치활동을 약화시키려는 기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박지원 민주당대변인).

: 경향 94.7.24.,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23면) · 제6호(68면) · 제8호(66~67면) · 제9호(86면) · 제11호(69~70면) · 제12호(69~70면) · 제13호(46~47면) · 제94-1호(48~49면) 참조

◎ 統一 · 外交 · 國防

○ 고엽제후유증환자진료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현행 상이군경 상이등급 구분표에는 1급1항부터 6급2항까지 구분되어 있으나 기동불능정도에 관계없이 움직일 수 없는 수족이라도 붙어있으면 상이등급상의 하위등급 판정을 받게 되는 지금의 현실성 없는 규정을 개정해야 함(이수만 고엽제피해자전우회 회장).
- 4개 보훈병원으로 검진을 한정치 말고 '고엽제치료센터'설립과 전국 국 · 공립 병원에서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치료기관 수를 늘려야 함(임종한 기독교청년의료인회 환경분과장).
- 고엽제후유증에 시달리는 월남참전용사들이 신체불구와 생활고 등을 비판한 나머지 자살만도 30여명에 이르고 있는 이 때 국가보훈처는 의무기록제출등

고엽제후유증의 입증책임을 환자나 그 가족에게 지우지 말고 치료와 보훈의 폭을 넓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임(석정원 대한해외참전전우회 복지홍보국장).

-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미흡한 보상과 지원은 ①보훈대상질병범위를 확대하고, ②고엽제 후유증 비해당자라도 질병을 앓고 있는 참전용사는 무상치료해야 하며, ③장기 임대주택 지원등 최소한의 생계수단을 강구해 줘야 하고, ④「참전기념탑」도 건립해야 함(송광호 민자당 국회의원).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26~27면)·제6호(69면) 참조

○ 국립묘지령 개정의견

- 국립묘지령 제3조(안장대상)제1항제2호에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를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규정에 ‘군복무중’이라고 규정하여 안장대상을 군인에 국한하고 경찰관이나 민간인을 배제한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평등권을 침해한 것임.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통일대비관련 입법의견

- 국회 법사위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특히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친족·상속문제처리를 위한 특례법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남북한 법률·사법 통합의 기본방향을 설정, 통일헌법, 민법, 형법 등의 남북교류가 재개될 경우 대비, 민사·형사·상사 등 주요법무분야에서의 남북간 세부합의서 시안을 마련하는 한편 남북한 주민 왕래절차를 취급한 ‘출입경’관리방안을 연구중임(김두희 법무부장관).

- 석기시대로 돌아갔던 휴전선 이북지역에 오늘과 같은 물질적 복구·건설을 한 것은 북한동포의 피눈물나는 노동의 결과이므로 ‘완전무’에서 그들이 갖게 된 것은 통일 뒤에 그들의 재산으로 인정돼야 마땅함(리영희 한양대 교수).

: 세계 94.7.13.,25면; 한겨레 94.7.16.,1면

◎ 內務 · 地方行政

○ 3개도농통합형태시설치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전국 65개 시·군(33시·32군)을 폐지하고 경기 남양주시등 33개 통합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합시 발족에 따른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함
(내무부).

: 한국 94.7.2., 2면

○ 경륜·경정법 관련 입법의견

- 경륜사업시행을 둘러싼 찬반논란은 입법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 사행심을 복돋워 재정수입을 늘리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윤리적 판단문제가 그 기저를 이루고 있음. 사행심은 원초적 본능인 만큼 이를 건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도 국가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주장인 반면에 경륜장소재지인 송파구의 조순환의원등은 환경공해와 반교육성을 들어 지금도 경륜사업시행을 반대하고 있어서 차제에 경륜사업시행에 관한 공청회와 함께 지역주민투표라도 해보아 여론의 여과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부작용과 역기능을 예방해야 함(한국일보 해설).

: 한국 94.8.6., 4면

○ 정부조달및계약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지난해말 타결된 정부 조달협정에 따른 조달시장 개방(97년 1월1일)에 대비하기 위해 ①정부조달의 국제입찰 때 계약은 일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②낙찰자 결정은 최저가낙찰제 및 적격낙찰제를 원칙으로 하고, ③이밖에 입찰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는 등의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제재하고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현행 '특례조달 분쟁심의위원회'를 '정부조달 분쟁조정위원회'로 개칭하기로 함(재무부).

: 한겨레 94.7.9., 2면

◎ 社會 · 教育 · 文化

○ 고용보험법시행령(가칭) 제정의견

-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고용보험법」 적용사업체를 근로자 30인 이상 업체로 하고, 보험료율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의 1.3%로 하는 내용의 「고

용보협법」시행령시안을 마련함(노동부).

: 조선 94.8.7., 2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2호(83~84면) · 제94-3호(91~92면) 참조

○ 교육법시행령 개정의견

- 대학의 교수확보율산출기준을 현재 학과당 교수수에서 내년부터는 계열별 교수1인당 학생수로 바꾸고 학과단위로 배정해온 정부차원의 각종지원도 폐지하거나 계열위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과통합으로의 정책 대전환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규제와 법령을 개정하기로 함. 이에따라 학과당 교수수로 되어있는 교수확보율산출기준을 교수1인당 학생수로, 학과당으로 산출하는 실험실습설비기준도 전공별로 바꾸며 학과단위로 배정해온 실험실습기자재구입지원과 특성학과 지원사업 등도 폐지함(교육부).

: 한국 94.7.27., 29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74면) · 제9호(94면) · 제13호(60면) · 제94-1호(55면) · 제94-2호(85~86면) · 제94-3호(92면) 참조

○ 노동법 개정의견

-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해 3월과 11월에 이어 또다시 6월 27일 한국의 「노동법」에 명시된 제3자 개입금지와 공무원의 파업권 제한,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등의 조항이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이의 개정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채택한 바, 국내외적인 지탄의 대상인 현재의 강압조치들을 '노동탄압국'으로 지목받지 않으려면, 제도부터 개정해야 함(한겨레신문 사설).

: 한겨레 94.7.1., 3면

○ 방송법 개정의견

- 「방송법」 개정시안에는 ①기존의 공중파방송은 「방송법」규정대로 대기업과 언론의 참여를 금지하되 특수위성방송(전문채널)의 경우는 재벌과 언론의 참여를 허용하며, ②현재 3년간의 허가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재허가를 받는 관행을 바꿔 허가기간을 공중파 5년, 위성방송은 10년 동안으로 늘리되 재허

가 때는 공보처 장관이 허가기간중 방송심의를 바탕으로 한 방송위원회의 평가의견을 들어 경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방송개발원).

- 「방송법」 개정시안을 포함해 각종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현재 가동중인 선진방송 정책자문위원회에 넘겨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는 내년초 개정안을 확정지를 방침임(공보처).
- 우선 당사자간의 합의를 제외한 언론중재위의 중재권한이 없어 효율적인 피해 구제가 곤란하다고 보고 중재위에 중재결정권한을 부여하고 중재신청기간도 연장하는 등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도록 할 방침임(민자당).

: 한겨레 94.8.4.14면; 경향 94.6.13..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64면) · 제94-2호(89~90면)

○ 사회교육법 개정의견

- 대부분 문화센터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백여 과목의 교양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행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이라는 근본취지와 너무 동떨어져 있고, 시설·설비기준도 엄격해 도저히 따를 수 없음(백화점 업계 관계자).

: 국민 94.6.27..7면

○ 사회복지관련 입법의견

- 사회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최종안에서 ①보건소를 보건복지사무소로 개편해 기존보건·진료업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공적부조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통합관장할 것, ②올해 초 말썽을 빚은 정부주도의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사회복지공금모금법(가칭)」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와 관련한 모든 모금을 관장할 기구로서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고 각계대표 30~50명으로 이 법인의 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모든 기부금품에 대해 전액 면세하는 내용 등을 담도록 하며, ③배우자의 학대 또는 성폭력피해를 받는 여성을 위한 시설을 늘리는 한편, 부모에게서 학대받는 어린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립아동상담소에 아동학대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보완하도록 건의하고, ④또 노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기준고용률을 현

행 3%에서 5%로 끌어올리고 공공기관은 이를 의무화할 것을 건의함(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

: 한겨레 94.6.18., 14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3호(96~97면)

○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현행 공표의 음반심의제는 사실상의 사전검열이므로, 발표와 판매허가제인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사후 처벌법으로 대체해 국민의 예술창작의 자유와 예술향유의 폭을 확대해야 하며, 가요의 불건강성을 막기 위한 규제규정과 벌칙은 현행 「청소년기본법」 및 그 시행령과 상당부분 중복되므로 이 법을 정비해 적용하면 됨. 이와 함께 비디오물과 새로운 영상·음향 복합매체인 CDG, LD 등은 영상관련법에 포함시키고 순수 음향물에 의한 음반만 음반법으로 규제해야 하고, 음반제작자의 자격요건도 완화해 국민의 음반제작 기회를 확대해야 함(한국가요작가협회).

: 한겨레 94.6.26., 9면

○ 학년별 속진제 관련 입법의견

- ①95학년도부터 과학·수학·예체능과목등의 우수학생에 대해 학년별 속진제를 도입하며 국민학생의 경우 3학년, 중·고교생은 1학년이상 학생중에서 선발해 속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②해당학생의 선발은 학년말에 뽑되, 과학(수학포함)·외국어등의 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학문 재능아의 학년별 속진기준은 전국적인 집단지능검사 결과 상위 5%이상인 학생을 비롯, △관련교과 전학년 성적이 학교내 동일학년의 1%이내고 비관련학과 성적이 30~50%이내 △국내외 학력대회 등에서 1~3위 입상자 △창의성·학업성취 결과가 우수한 학생 △정상적인 심신발달과 사회적응력·안정된 정서를 지닌 학생 가운데서 선발하며, ③전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학문 재능아의 학년별 속진기준도 특정학문 재능아와 같으며 예체능 학생의 경우에는 △집단지능검사 결과 상위 30%이상 △관련학과 성적이 학교내에서 1%이내 △비관련학과 성적이 50%이내 △국내외 경시대회에서의 1~3위 입상자 등임, ④초·중·고교의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해당학교에 초심판별위원회와 시·도교

육청에 재심판별위원회를 뒤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자를 판별하며 상급학교에도 판별위원회를 뒤 조기입학생을 선발하도록 할 방침임(교육부).

: 서울 94.7.5., 23면

○ 한자·한문교육에 대한 견해

- 문화정책의 기본인 어문정책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의 결여로 지금까지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바, 1995년도부터 시행되는 6차 교육과정은 중등학교의 한문교과를 선택과목으로 처리했는데, 한자문화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역사적인 관점 및 국가경쟁력이라는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에 바람직한 한자한문교육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1972년의 교육법시행령 제109조에서 한문을 독립필수과목으로 신설할 때와 같이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현금의 한자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임.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産業 · 經濟

○ UR관련 입법의견

- 「조세감면규제법」, 「외자도입법」, 「대외무역법」, 「공업발전법」, 「특허법」, 「저작권법」등 모두 53개의 UR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함. ①「조세감면규제법」의 경우 'UR 보조금·상계관세협정' 타결에 따라 조세감면체계를 축소·정비해 나가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UR보조금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며, ②「대외무역법」은 무역대리업제도의 신고제 전환, 산업설비수출 신고제도 등을 폐지하기로 하고, ③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중 연구개발지원을 규정한 '실용화사업' 규정이 상계가능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국적선 이용을 의무화한 「해운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나가기로 함(당정).
- 우루과이(UR)협정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농림수산부 소관법률 22건, 재무부 12건, 상공자원부 8건, 과학기술처 3건, 특허청, 내무부, 환경처 각 2건 및 교육부, 문화체육부, 체신부, 노동부, 건설부, 해운항만청 소관법률 각 1건 등 모두 57개의 UR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함. 「특허법」의 경우 지적재산권협정과 국

내법을 일치시키기 위해 등록일로부터 15년으로 되어있는 특허권을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보호기간을 창작 후 50년에서 창작자 사후 50년으로 하며, 소급보호규정도 88년 7월이후 창작된 것을 회원국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 개정하도록 함. 또한 UR서비스 양허계획과 국내법을 일치시키고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 「세무사법」의 시험 응시자격중 국적요건을 삭제하고 「은행법」과 「외국환관리법」은 영업제한을 완화하기로 함(당정).

: 한국 94.7.23., 2면; 조선 94.7.20., 2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72~73면) · 제94-1호(62~63면) · 제94-2호(제93-94) 참조

○ 경쟁제한관련 입법의견

- 일부 경제법령이 진입장벽이나 담합에 의한 가격규제, 공동구매 등의 공동행위, 판매지역 제한, 각 부처의 과도한 행정지도 등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경쟁제한 요소를 1백9개 경제법령에 대한 검토를 끝내는 대로 본격적인 개정 및 폐지작업을 벌일 예정임(공정거래위원회).

: 동아 94.6.21., 11면

○ 공업발전법 개정의견

- 특정산업육성시책을 폐지하면서 기능별지원시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86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를 올해안에 개정해 공업외에 지식집약사업이나 물류 등 지원서비스업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기능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그동안 시장개방, 자율화조치를 꾸준히 추진해 왔기 때문에 산업정책을 크게 바꿀 계획은 없고, 수출성과에 따른 지원, 내국산과 외국산을 차별하는 제도 등 특정성이 있는 제도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되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보조금, 즉 연구개발이나 낙후지역개발 및 환경보전관련지원책등은 오히려 확대해 심화되는 국제경쟁에 대응하여 나갈 방침임(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 세계 94.6.25., 7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79면) 참조

○ 국제경쟁력강화관련 입법의견

- 지난 7개월 동안의 활동을 종합해 지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안을 비롯, 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한 5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①지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안은 무형자산인 지식을 실물자산과 같이 평가, 지식산업을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대상분야를 개발, 육성하며 대통령이 정례확대회의를 주재,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②기능심사 및 자격인정에 관한 법안은 기능 기술인을 우대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자격인정기관도 국가뿐 아니라 자치단체 민간단체로 다양화하는 내용이고, ③행정기준의 현실화 및 책임행정구현을 위한 임시조치법안을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허가등 규제업무는 기안자,조정자,결재자등 3단계이하로 축소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며, ④이밖에 중소기업의 독자적 또는 공동의 인력확보를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법안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함(국회 국제경쟁력강화특위).

: 동아 94.7.15.,2면

○ 기업활동규제완화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공업입지 선정단계에서 1년, 공장설립 인·허가단계에서 7개월, 건축 및 등록 단계에서 다시 1년이 걸리는 등 각종 규제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①민간이 공단을 개발해 기업활동에 사용할 경우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대신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분은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며, ②농지나 임야 전용시 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대체조립비, 대체농지조성비로 일원화하는 등 복잡한 세제를 간소화해야 하고, ③농지전용추천서를 공장설립 신고서로 대신하고 사업시행자로 일단 지정되면 토지거래 허가·신고절차를 면제해주는 등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인·허가기간과 경비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④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성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지역실정에 맞는 설계·환경영향 평가 등으로 경비를 절약하고 지방기업을 유치하도록 해야 함(노성호박사 산업연구원 『「기업활동규제완화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공청회』).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 수입선 다변화제도등 기업의 신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각종 보호장치를

조기에 철폐하거나 축소해 나아가기로 하며, 이를 위해 수출입, 환경분야등 기업활동규제심의위가 발굴한 1천4백여건의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완화작업에 착수, 그 결과를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함(당정).

-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확인 제도를 없애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공단조성 기간을 줄이고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업항 건설과 항만시설 축조공사의 승인권한을 현행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로 위임해야 하고 기업이 공업단지 및 공장용지를 조성하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개발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수준인 50%를 감면해 주고 각종 부담금을 통폐합하여 일원화해야 함(대한상의).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상시근로자의 15%수준으로 의무고용하도록 했던 것을 장애인 1%, 국가유공자 2%로 고용의무비율을 대폭 현실화하기로 하고, 또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공단조성 및 입지선정과 관련된 인·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하기로 함(당정).

: 경향 94.6.25., 8면; 서울 94.7.2., 2면; 경향 94.7.22., 9면; 경향 94.8.10.,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90~91면) · 제94-1호(65~66면) · 제94-2호(96~97면) 참조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안관련 입법의견

- 2단계판매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상위직에 이익금을 배분하는 등 변칙행위가 잇따르고 있고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단계판매 허용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을 것임(최충대 소비자보호원 거래제도부장).
- 미국의 통상압력을 들어 사회경제적 범죄행위의 하나인 다단계판매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서울기독교청년회 시민중계실).
-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데 다단계판매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안됨(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이사장).

- 현행 법률에서는 다단계판매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지급가능조직구조를 판매업자 상대방의 상대방까지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2단계로 시스템을 제한하고, 시행규칙에는 교육 및 지도명목으로 일정한 이익을 지급할 수 있다는 모순점이 있었는데도 이를 개선하기는 커녕 다단계판매의 전면 허용은 상거래 관행 및 거래질서를 혼란시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판매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따라 소비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판매망에 들어가 중간이윤을 얻기 위해 상품을 사는 꼴이 되어 결국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사행성 상술에 피해를 보고, 점조직 특성상 계약철회 또는 반품·환불시 피해보상을 받기도 어려움(한국소비자보호원).
- 개정안은 폐단이 뚜렷한 피라미드방식의 다단계판매를 합법화하고 파격적인 수익을 제공한다고 구매자를 유인, 판매자로 전락시켜 수많은 피해를 유발하며, 생산과 관계없는 다단계유통조직을 형성해 결국 상품값만 높이고 있음(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피라미드판매를 규제하고자 「방문판매법」을 제정할 당시인 지난 91년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에서 법개정은 무의미함. 개정안이 상승적 이윤배분을 제한한 제18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 법률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며, 현재 피라미드판매를 규제하는 「방문판매법」이 있음에도 피라미드판매와 관련해 감금·폭행·자살 등 범죄와 일탈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을 무시하고 불로소득과 사행심을 통한 간접수익을 기초로 하는 다단계 판매를 장려함으로써 사회적 폐해를 증가시키고 실정이 다른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줄이지 못할 것임(이용철 변호사).
- 다단계 판매는 소비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의 품질개선노력을 유도하는 유망한 마케팅방법으로 이제까지 피라미드판매로 인한 피해가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인양 오인되어 다단계판매를 위축시켜 왔음. 유통시장개방을 앞둔 국제화시대에 진출, 외국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국내의 사전준비작업으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육성이 시급하며, 다단계 판매에 대한 규제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강제판매를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피라미드기업에 한해야 함(김준령 한국전략마케팅연구소 소장).

: 한겨레 94.7.30.,14면; 세계 94.8.4.21면; 서울 94.8.9.,1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92면) * 제94-3호(100~101면)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관련 입법의견

- 1종시설(도로, 철도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부대시설의 범위를 기존법안에 명시한 9개 사업외에도 '1종시설과 관련되며 사업취지에 반하지 않는 사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이 법안에 부대시설의 범위를 주택건설, 택지개발, 도시계획, 재개발, 공단개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 화물터미널, 항만운송, 집배송단지 등 9개로 규정함. 이 규정은 부대사업중 재개발사업의 범주에 도심재개발만 포함하고 주택재개발은 제외하자는 야당측의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이는 반대급부로 여당측이 주장해 삽입되었으며, 2종시설에 박물관과 미술관을 추가함(법안심사소위).
- 민자유치법에 의하면 민간기업은 일차적으로 SOC를 공급해야만 주거 및 공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나 「지역균형개발법」을 이용하면 민간기업이 주거 및 공업단지를 포함한 복합단지개발계획을 수립,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독자적으로 계획을 집행할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묶이는 SOC확충사업에 참여하지 않고서도 수익성이 높은 민자유치법상의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민자유치방식을 선호할 것이므로 양법상의 적용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김의준박사 국토개발연구원).

: 동아 94.6.14., 11면; 국민 94.6.25., 6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1호(66면) 참조

○ 산업은행법 및 주택은행법 개정의견

- 산업은행 수권자본금은 현행 1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주택은행은 3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하고 산업은행의 주식인수 한도는 현행 납입자본금 범위내에서 자기자본의 2배이내로 확대하고 자기자본의 10배이내인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채무보증한도를 30배 이내로 넓힐 계획이며, 또 「주택은행법」의 정부의 1/2출자의무 규정도 삭제하며, 「은행법」의 동일인 주식소유 제한규정을 주택은행에도 적용하도록 「주택은행법」에 명시하기로 함. 이와 함께 민자 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본금 형태로 되어 있는 현재의 출자증권을 주식 형태로 바꾸기로 하며, 산금채 발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산금채 발행총액에 대한 국회의결을 생략하고 업무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절차도 생략하기로 함(재무부).

: 동야 94.8.4.,10면; 한겨레 94.8.4.,6면; 세계 94.8.4.,8면

○ 상표법 개정의견

-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분야협정(TRIPS)에 이 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96년부터 색채상표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4월 각계 전문가로 색채상표 실무대책반을 구성,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색채상표 보호형태를 마련해 오는 11월중 공청회를 거쳐 내년중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임(상공자원부).

: 세계 94.7.115.,9면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①새로 설립되는 신용정보회사는 제 3자의 의뢰를 받아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조사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기존의 신용조사업 외에 △일반 신용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다가 의뢰인의 조화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업 △채권자의 의뢰에 따른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권추심업 등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하며, ②신용정보회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자본금규모를 1백억원 이상으로 강화해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되, 신용조사업만 하는 경우는 자본금을 5천만원 이하로 낮춰주기로 하고, ③국가안보·기업비밀·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한 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사를 금지하고, 금융기관 백화점 할부판매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회사에 제공하려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서면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재무부).

: 한겨레 94.7.12.,8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71~72면) 참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의견

- 날로 늘어나고 있는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형 건축물의 에너지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역별 기후조건이나 건축물의 용도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업종별 최대허용에너지의 사용단위를 정하고, 이같은 기준을 초과해 에너지를 사용한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는 개선명령을 내리

고, 이같은 기준을 초과해 에너지를 낭용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임.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 있는 사무용건물은 1백년간 m^2 당 4백42Mcal, 숙박시설은 7백65Mcal, 병원은 5백98Mcal, 백화점등 판매시설은 6백69Mcal의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함(상공자원부).

: 세계 94.7.1., 7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46면) · 제3호(57면) 참조

○ 예금자보험제관련 입법의견

- 금융개혁방안으로 신경제 5개년계획중 96~97년중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 예금자보험제도를 96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내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임창렬 재무부 제1차관보).

: 한국 94.8.10., 2면

○ 은행법 개정의견

- 작은행이 자본금을 늘릴 때 지금까지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거쳤으나 빠른 시일내에 「은행법」을 개정, 금통위 인가 조항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해당 은행이 결정하면 금통위 절차없이 증자할 수 있게 할 방침임(윤종화 재무부 금융총괄과장).

- 금융재벌로 낙점을 받으면 고객의 돈을 합법적으로 기업확장에 쓸 수 있게 되어 경제력 집중면에서 현대의 정주영씨나 삼성의 이건희씨 차원을 능가할 것임(이인표박사 한국조세연구원).

- 금융재벌을 육성하기 위해 소유제한을 완화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산업재벌은 물론 개인인 금융자본가나 법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도 지양되어야 함(박상용 연세대교수).

- 동일인 은행소유주식상한을 현행 8%에서 4%로 낮추는 대신 금융전업자본가에 한해서는 은행주식의 15~20%까지 소유를 인정, 금융전업기업군을 육성키로 하고 「은행법」개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함(당정).

: 경향 94.6.12., 7면; 국민 94.6.29., 8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97면) 참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개정의견

-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현재 건물신축용에 한해 취득일로부터 1년간 토초세를 비과세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을 거쳐 3년간 과세하지 않기로 하며 올해 정기국회 「지방세법」 개정때 종교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과세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함(재무부).

: 조선 94.6.23., 11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5호(52면) · 제10호(87~91면) · 제11호(89~90면) 참조

○ 지방세법 개정의견

-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해 지금까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아온 법인이나 사업체에 대해서는 50%만 감면해주도록 하고, 감면 혜택을 받아온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세할 방침임(내무부).

: 한겨레 94.6.23., 2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66면) 참조

◎ 農林·水産

○ 농어촌발전 관련 입법의견

- ①농어민 의료보험부담 경감 : 보험제정의 국고지원분을 현행 4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어촌주민도 직장 근로자와 같이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해 동일생활권의 시·군 의료보험조합 통폐합 추진하고, ②95년 하반기부터 농어민연금제 실시 : 정부재정지원은 농어민에 한해 최저등급 각출료의 3분의 1(월2천2백원)을 농특세 재원에서 지원하고, 고령농어민을 위해 가입연령을 국민연금의 60세에서 65세까지 확대함(농림수산부).

: 국민 94.6.14., 6면

○ 농수산물 유통개혁관련 입법의견

- ①품목별 전문조합 설립을 신고제로 바꾸며, 산지수집상은 출하처 도매시장에

등록하게 하고 「표준발매기 거래약관」을 기초로 상호계약에 의한 거래를 유도하여 발매기로 폭리를 취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금액과 계약금액이 20%이상 차이가 나면 이익 또는 손실을 농민과 수집상이 절반씩 나누고, ②현재의 중매인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바꾸어 '공공출자법인'에 의한 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 일원화를 검토하고, 서울 가락시장 청과류의 상장수수료를 현행 6%에서 4.5~5%로 인하함. 지정도매법인소속의 경매사를 관리공사 소속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며, 지정도매법인 운영상태를 매년 평가, 매장면적을 재배분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는 지정을 취소함 ③정부가 부지를 조성, 기간시설비등을 지원하고, 생산자단체와 민간유통업체등을 입주시켜 일정기간 무상임대하는 종합물류단지를 건설하고 「소비자협동조합법(가칭)」 제정을 추진,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간의 직거래사업을 활성화함(농림수산부).

- 정부의 대책안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묶어줄 수 있는 「소비자협동조합법(가칭)」 등의 제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현 농안법의 시행유보기간이 10월말로 끝나는 점을 의식, 중매인의 도매행위허용쪽에만 너무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도 있으며, 유통비용의 획기적 절감대책이나 농수산물의 가격지지 및 보장대책, 전국 물량의 50%를 소화해 내는 유사도매시장에 대한 근본대책 등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음. 특히 중매인의 발매기 금지조치나 무·배추등 채소류의 상장이 뜻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경향신문 해설).

: 조선 94.8.10.,8면; 경향 94.8.10.,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3호(104면) 참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현행법상 중매에 국한된 중매인의 기능을 아예 도매 위주로 바꾸고 중매인이라는 이름도 중도매인으로 고쳐 부르기로 하며, 대신 중매인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산지수집행위와 수탁판매는 물론 소매행위도 금지하고, 발매기거래가 농수산물 유통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제도임을 인정해 산지수집상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표준거래약관을 제정해 계약에 의한 발매기거래를 유도하기로 함(농수산물유통개혁기획단).

: 한겨레 94.8.10.,2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3호(104~106면)

◎ 建設

○ 建設기술관리법 개정의견

- 부실공사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부실설계를 제재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에 부실 설계업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함. 제재가 신설되는 설계분야는 토목분야로, 이미 제재조항이 있는 건축부문과의 형평을 고려해 제재수준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과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처분 등으로 처벌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임(건설부).

: 한겨레 94.6.16., 11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94면) · 제4호(35~36면) · 제8호(104면) 참조

○ 국토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기존 30여개의 국토관련법안이 일관성을 결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국토이용관리법」등 관련법안을 「국토기본법(가칭)」으로 통합키로 함. 이를 위해 각계원로 · 전문인사를 망라한 국토기본법제정위원회(가칭)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국토에 관한 기본법제정 건의안'을 확정 청와대에 건의하였으며, 「국토기본법(가칭)」에는 ①국토공간의 균형축진, ②국토이용의 생산성 제고, ③개발과 환경의 조화 강화, ④국토의 통합성 확보를 4대원칙으로 해서 세계화와 지방화,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고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과 환경파괴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함(민자당).

: 경향 94.7.18., 2면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행정상의 특혜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그린벨트의 경우 그 설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목(2)는 '공장 · 주택등을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자는 5년이상거주자 ...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구역내에 주택을 5년 이상 소유(1가구1주택)하고 있으면서도 직장때문에 그 구역외의 지방으로 전

근이주한 자가 다시 그 주택에 거주할 것을 목적으로 전입한 경우(1가구 1주택)에는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본다'는 예외규정을 둘 것을 건의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2호(96~97면) · 제13호(82면)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의견

-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중 일부내용을 수정한 안에 따르면 ①임대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임대주택을 분양해주지 않기로 하고, ②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무주택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③임차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박탈하기로 하고, ④1가구 이상의 주택임대자를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정하려던 방침을 바꿔 5가구 이상 임대자로 주택임대사업자 범위를 축소하여 5년이상 임대한뒤 매각하면 양도세의 50%를 감면받고 10년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전액을 면제받게 함 ⑤임대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의 하자수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등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⑥3백채 이상인 임대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임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연 1회씩 받도록 함(건설부).

: 한겨레 94.6.24.,7면; 동아 94.8.3.,7면

○ 전문건설업 기술자 의무고용관련 입법의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2인이상, 기능사 3인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된 포장공사업과 조경공사업등 19개 종목의 전문건설업 면허기준을 기술사 1인, 기능사 2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기술자 2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된 주택건설등록업자 기술자 채용기준도 1인 이상으로 축소할 계획임(건설부).

: 세계 94.6.25.,7면

◎ 科學技術 · 交通 · 遞信

○ 과학기술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우루과이라운드협정 타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1백개에 달하는 과학기술 관계법령과 2백여개의 일반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과학기술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각종 조세금융 구매지원제도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기본법과 각종 지원제도 실행을 위한 법률의 상호관계 및 위상에 대한 체계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함(민자당).

: 국민 94.8.1.,2면

○ 기상업무법등 개정의견

- 민간 기상사업자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각종 기상정보를 개인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관측 원시자료와 기타 필요한 정보를 이들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기상사업 민간참여시책'을 마련함.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상정보 내용은 수요처별로 개별 공급하되 대중적인 홍보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또 민간 사업자는 각종 미디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할 때 제공자를 명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함. 이에따라 97년까지 현재의 응용기상국 농업기상과를 산업기상과로 개편, 민간업자에게 기본적인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상업화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시키는 한편 민간부분 기상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기상자료를 가공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기상예보사를 두며 장기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상기술사제를 도입키로 함. 그러나 공익성과 대표성이 큰 방재·일반기상정보 및 특별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상부문의 서비스는 기존대로 담당할 방침임(기상청).

: 서울 94.7.7.,22면

◎ 環境 · 保健

○ 음용수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애초 입법예고했던 음용수관리법안을 고쳐 지하수 외에도 하천수·계곡수 등 수질기준을 만족시키는 모든 지표수를 광천음료수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잠

정 결정함(당정).

- 음용수관리법안이 원수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이번 회기중 법안심의를 하지 않기로 함(국회 노동환경위원회).

: 한겨레 94.6.16.,2면; 국민 94.7.15.,18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3호(123면) 참조

○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 입법예고한 「자원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안과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에 이쑤시게 금지조항을 새로 추가해 나무젓가락·종이컵과 마찬가지로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 때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또다시 어길 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함(환경처).

: 한겨레 94.8.4.,18면

○ 지하수법 개정의견

- 지하수 업무가 건설부·상공자원부·농림수산부·환경처 등 무려 4개부처로 분산돼 있고, 신고대상 지하수 관정을 하루 취수량 30t 이상의 대형시설로 국한해 대부분의 우물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같은 지하수라도 음용수·약수·온천수는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돼 법체계의 불합리성에 따른 시행착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최병수 농어촌진흥공사 지하수개발처장, 『지하수 개발과 농어촌용수』 심포지엄).
- 현재 지하수 조사·개발·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원연구소·농어촌진흥공사·환경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의 기술진과 장비 등을 통합해 국가차원에서 지하수자원을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이 기구가 기술적인 검토를 벌여 지하수 개발을 허가하도록 해야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막을 수 있음(이천복 경인엔지니어링사장).

: 한겨레 94.7.6.,8면

○ 환경관련법 개정의견

- ①이법에 개정될 「음용수관리법」은 광천음료수등 음용수의 기준을 '암반대수

층내의 지하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수를 물리적 처리를 통해 음용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물」로 규정, 지하수 뿐아니라 계곡물등의 생수판매도 가능하게 하고, ②「수도법(개정안)」은 광역상수도는 건설부장관, 광역상수도의 정화 시설 및 지방상수도는 환경처장관, 간이상수도는 시·도지사가 인가하도록 하는 등 일반수도사업에 대한 부처간의 기능을 조정함 ③「하수도법(개정안)」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구역내에서는 처리시설의 사용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도록 의무화 함 ④「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은 그동안 청소년들의 환각제로 이용되어온 부탄가스의 흡입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함(당정회의).

- 상수원보호를 위해 입법추진해온 토지선매제도와 토지매수청구제도의 도입이 완전 백지화되고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조항은 원안대로 살리기로 함(차관회의).

: 경향 94.6.14.,21면; 경향 94.6.18.,21면

◎ 法院 · 法務

○ 법무행정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병역을 마치지 않은 일부 수료생을 3년동안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업무에 종사시킴으로써 군복무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법무관제도를 도입키로 함(당정).

: 동아 94.7.23.,29면

○ 인권관련 입법의견

- 온전한 개혁을 위해 법제도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는 구시대의 악법 폐기와 개혁입법으로 △국가보안법 폐기 △정보공개법의 제정 △노동관계법 일부조항의 개정 △통합선거법 · 정치자금법 · 지방자치법의 제 · 개정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제약하는 헌법규정 및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사립학교법의 관계규정개폐 △환경법의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함(홍준형 아주대 교수).

: 한겨레 94.8.4.,11면

- 과거청산의 실현을 위한 절차로 진실의 공개·책임자처벌, 희생자에 대한 사면·배상, 원상회복, 수단화한 법률·제도·관행 폐지등이 그 예이며 '재심절차'가 검·경이나 법원의 무성의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지 오래며 '공소시효제도' 역시 "정의의 실현에 대한 하나의 장애물이며 불의의 의지처" 구실을 하고 있음.

인권침해자의 처벌은 희생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자 배상의 한 형태이므로 범죄의 진실파악과 처벌의 실제적 조건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진정한 용서를 구할 수 있음(박원순 변호사).

- 12·12 쿠데타의 광주학살, 삼청교육만행은 5,6공정권의 3대원죄로서 현행법상 12·12는 반란죄, 내란죄등으로 광주학살은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등으로 법적심판이 가능함. 현정권하에서는 검찰이 이 사건들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회차원에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해야 할 것임(이승호 충북대교수).

: 한겨레 94.8.4., 11면; 세계 94.6.16., 5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2호(116면) 참조

○ 입양특례법 개정의견

- 지금까지 입양아를 친자로 입적할 수 없어 국내입양이 저조하고 편법으로 친자 입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앞으로는 입양아를 양부모의 뜻에 따라 친자나 양자로 입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가정에 국민주택의 우선분양권을 주는 한편 양육보조금도 지급하도록 하며, 양부모의 자격을 현재의 '충분한 재산소유' 외에 양부모중 한쪽이 25세이상일 것과 부부가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할 것등으로 구체화함, 특히, 입양아의 권익보호를 위해 양자를 학대·유기할 때는 입양기관이 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보사부).

- 입양사업 개선대책과 관련, 보육원에서 자라거나 유기된 아이를 데려다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위탁보호아동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거택보호에 준하는 생계비등을 지급해줄 방침임(보사부).

: 한국 94.8.6., 22면; 서울 94.8.6., 23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3호(131~132면) 참조

Ⅲ. 주요입법예고법률안

1. 주요입법예고법률안목록

(1994.6.11.~1994.8.10)

- ◎ 統一 · 外交 · 國防 101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군검찰사무운영규정개정안
 -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 보훈기금법중개정법률안

- ◎ 社會 · 文化 · 教育 106
 - 교육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사회보장기본법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법제정법률안
 - 윤락행위등방지법개정법률안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 産業 · 經濟 112
 -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
 - 공업발전법개정법률안
 - 국민은행법폐지법률안
 - 군납에관한법률개정안

- 보험업법개정법률안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 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정부조달및계약에관한법률제정안
- 중소기업과대기업간의협력증진에관한법률안
- 중소기업기본법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진흥법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주택은행법중개정법률안

◎ 農林 · 水産 128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농지법제정안
- 수산업협동조합법주요개정법률안
- 임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科學技術 · 交通 · 遞信 137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도선법중개정법률안
- 원자력법중개정법률안
-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토양환경보전법제정안
- 한국전기통신공사법중개정법률안
- 항만법중개정법률안

◎ 環境 · 保健 148

- 국민건강증진법안
-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法院 · 法務 150

- 검찰청법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 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안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차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소년원법중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2. 주요입법예고법률안내용

(1994.6.11.~1994.8.10)

◎ 統一 · 外交 · 國防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4.19의 개념이 재조명됨에 따라 관련단체의 명칭을 개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4.19의 개념이 “4.19의거”에서 “4.19혁명”으로 재조명됨에 따라 관련국가유공자단체인 4.19의거상이자회를 4.19혁명상이자회로,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4.19 혁명희생자유족회로 함.

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의 지회는 시 · 군 · 구(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도록 함

다. 이 법률에 의한 단체중 회원수가 300인 미만인 단체의 총회구성에 관하여는 해당 단체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단체의 보조금의 교부와 단체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등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규정을 정비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무공 · 보국수훈자를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4.

- 19의거 사망자 및 상이자를 4.19혁명사망자 및 상이자로 함.
- 다.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의 범위에서 사실상 재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제외함.
- 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요건이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함.
- 마. 이 법의 적용대상자의 생활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개인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바. 이 법에 의한 연금액은 국민의 생활수준, 공무원의 봉급, 물가 기타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조정되어야 하도록 함.
- 사. 취업보호실시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상시 50인미만을 고용하는 사기업체는 제외하도록 함.
- 아.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자를 해고 또는 해임하거나 그가 퇴직한 때에는 그 사유를 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자. 전상군경등이 무료 또는 할인이용할 수 있는 수송시설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추가함.
- 차. 이 법 적용대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카.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대상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및 가족은 제외하며, 배제시기는 배제사유가 확인된 달부터 하도록 함.
- 타.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성립된 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지 아니하도록 함.
- 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에 사실상 재혼중에 있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 유공자의 배우자로 보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실시함.

○ 군검찰사무운영규정개정안

1. 개정이유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종래 군사법원에 부치되던 군검찰부가 독립기관이 되고, 구속영장발부권자가 관할관에서 군판사로 변경됨에 따라 군검찰사무운영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군검찰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검찰부의 선임검찰관이 검찰부장이 되도록 함.

나. 군사법원법 제36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각군본부고등검찰부가 국방부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함.

다. 군사법원법 제36조제5항 중요사건의 관할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함.

라. 약식명령청구시의 절차를 정함.

마. 기타 종전의 구속영장발부권자가 관할관에서 군판사로 변경되고, 영장신청의 경우 검찰관의 신청을 청구로 표현을 수정하는등 법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함.

○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시대발전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장교양성체계의 개선이 필요한바, 육군 중장기복무장교 양성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기사관학교양성과정의 개선으로 우수자원의 안정적인 획득 보장

2. 주요내용

가. 학사과정 삭제

나. 입학자격:전문대학졸업자/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대학에서 2년이상 과정을 수료한 자

다. 졸업자격 : 대학졸업자격 부여, 학사학위 부여(이학사, 문학사, 공학사)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1. 제정취지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현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공헌과 희생의

정도 및 성격이 상이한 다른 유형의 국가유공자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독립유공자를 분리하여 별도입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정당하게 재평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독립유공자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천명함.

나. 국가는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독립유공자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함.

다.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하며, 보상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 재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자녀중 출가하지 아니한 자, 부모, 손자녀중 출가하지 아니한 자, 자부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입적된 자, 자녀 및 손자녀중 출가한 자로 함.

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과 마찬가지로 보상금·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양로보호·양육보호·주택의 우선 분양 및 국립묘지에의 안장으로 하되, 연금을 받는 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하며,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없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순위 손자녀 1인을 포함함.

마. 일제강점시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정착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정착을 위한 취업보호·대부등을 우선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함.

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앙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정부출연금,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함.

사. 독립유공자사업기금의 용도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독립운동관련기념사업, 기금조성경비 및 기금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기타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공훈선양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함.

아. 이 법 적용대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독립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자. 독립유공자중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국외에서 반국가행위를 한 자, 독립운동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거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고 금고 1년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및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확인된 달부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차.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은 이를 폐지함.

○ 보훈기금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현행 보훈기금내에 설정된 자금이 세분되어 예산의 편성, 집행과 결산등이 번잡하므로 이를 조정·통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명시된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사업을 성격이 같은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사업에 통합하여 운용함.

나. 대간첩작전희생자의 지원 및 보상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도 국가유공자등의 지원과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통합하여 운용함.

다.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자금과 대부지원자금을 통합하여 보상자금으로 하고, 복지사업자금은 공단사업자금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자금은 향군사업자금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

◎ 社會 · 文化 · 教育

○ 教育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능력에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제1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①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법 제95조, 제102조, 제106조 및 제150조 내지 제154조 규정에 불구하고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의 부여 기타 수업상의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國民연금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을 모든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자에게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그동안 연금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골자

가. 23세이상 60세미만인 농어촌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을 지역가입자로 하여 당연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60세이상 65세미만인 농어민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나. “각출료”를 “연금보험료”로 하고,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기준인 “보수”와 “소득”을 “소득”으로 일원화함.

- 다. 남편이 사망한 처에게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상태가 있는 경우 50세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함.
- 라. 가입자의 사망시 반환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함.
- 마.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의 국고부담을 임의부담으로 함.
- 바.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은 9%로 하되, 사업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 최초 3%에서 5년마다 3%씩 상향 조정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시 매월 납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함.
- 아. 농어민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에서 균등지원토록 함.

○ 사회보장기본법제정법률안

1. 제정취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이념과 범주등을 정하고, 우리의 실정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룬 복지사회 실현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념으로 함.
- 나. 사회보장의 범주에 사회보험, 사회복지, 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보건·주거·교육·고용분야등 관련 복지제도를 포함함.
- 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함.
- 라.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와 스스로 자립·자활에 노력할 책임을 정함.
- 마.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함.
- 바. 보건사회부장관은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해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동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함.

사.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 전문성등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운영 원칙을 정함.

아.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수급권의 양도·담보·압류는 금하며, 수급권의 제한 또는 정지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시행토록 함.

자. 사회보장수급권이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주체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국민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위법·부당하게 침해 받은 국민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공동모금법제정법률안

1. 제정이유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이웃돕기모금에 의해 조성된 성금을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편입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관 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운용을 지양하고 민간단체가 직접 모금 및 배분·관리토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단위의 중앙공동모금회와 시·도지역공동모금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나. 중앙공동모금회와 지역공동모금회는 각각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되 중앙공동모금회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역공동모금회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함.

다. 공동모금회는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기획·홍보·모금 및 배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재원조성은 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및 이 법에 의한 복권 수익금등으로 함.

- 마. 조성된 재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사회복지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바. 기부금품은 수시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모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모집기관을 지정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 사. 중앙공동모금회는 사업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복권의 종류와 방법·금액 및 발행조건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아. 기부자가 사용 용도 또는 수혜대상자를 지정하여 금품을 기부한 경우에는 그 지정 취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함.
- 자. 공동모금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배분명세를 공고하여 투명한 업무 수행과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함.
- 차. 중앙공동모금회는 지역공동모금회의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총괄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공동모금회에 사업의 조정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동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의 제출과 법인의 운영상황 조사,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타. 공동모금회 또는 모집기관 이외에는 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파. 공동모금회의 설립 준비등을 위하여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함.
- 하. 보건사회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기금중 '95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제외한 적립금은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중앙공동모금회에 이관하도록 함.
- 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개정토록 하여 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기부금품에 대하여는 손금산입(면세) 혜택을 주도록 함.

○ 윤락행위등방지법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타법령에 비하여 미약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윤락행위자를 선도보호차원에서 시설에 입소하는데 따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의 실효성 확보와 윤락행위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를 불식시키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각종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윤락행위 등의 방지 및 선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윤락행위자의 시설입소에 따른 법적근거 보완
 - 선도보호처분
- 윤락행위자에 대하여 법원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와 함께 1년의 범위안에서 보호시설에 입소토록 하는 선도보호처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 선도보호조치
- 윤락행위자중 20세 미만인 초범자와 요보호자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방선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지사가 보호시설에 입소조치토록 함.
- 일종의 행정처분으로서 선도보호조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선도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2인 이상을 포함시키도록 함.
- 선도보호가 결정될 때까지 1월의 범위안에서 일시보호소에 입소시켜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보호시설에의 선도보호기간은 교육목적을 고려하여 10월 이내로 명시함으로써 보호기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선도보호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불복이 가능토록 함.
- 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여성복지상담원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윤락행위의 방지와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명시
- 공무원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직권남용등을 규정
- 처벌강화로 법의 실효성 확보
 - 윤락행위자와 그 상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윤락행위업주등 착취·방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을 우대 또는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고, 재활시설연계고용제를 도입하여 장애인 시설의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한편,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등 법률시행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 및 국민일반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교육 및 고용촉진운동을 전개하도록 함.

나.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대조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결산잉여금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계속 사용토록 함.

라.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조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중증장애인 1명을 2명의 장애인으로 산정 부담금을 경감토록 함.

마. 사업주가 장애인 재활시설 등에 도급을 주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부담금 신고·납부기간을 다음 연도 초일부터 60일이내에서 90일이내로 연장하며 매년 고시하는 부담기초액의 기준을 명확히 함.

바. 부담금의 반환 및 고용보조금 청구권의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함.

사. 고용보조금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함.

아. 장애인 고용계획서 제출위반, 단순한 조사거부, 기피행위 등에 관한 행정벌을 과태료로 완화함.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산업 사회화에 따른 다양화 사회교육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질높은 사회교육서비스를 제고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특색있는 지방 사회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국민학교 재학생의 일반 교과목의 과외 교습학원 설립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원설립이 가능하도록 함.
- 나. 현행법상 학원을 설립·운영함에 있어서 교습 과정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시의 구비서류가 동일하고 그에 대한 지도·감독도 동일하여 그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등록제로 일원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
- 다. 학원의 단위 시설별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교습 과정별 시설 규모는 지역실정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하여 지방교육자치 정신에 부합토록 함.
- 라. 현행법상 주무관청의 수강료 기준 설정권을 삭제하되, 수강료의 게시를 의무화하고 교육감은 수강료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마. 교육감을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한 등록취소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
- 바. 건전한 학원교육을 위하여 학원 설립·운영자로서의 책무를 규정하고, 결격조항을 신설함.
- 사. 교육감은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아. 벌칙을 강화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도모함.

◎ 産業 · 經濟

○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

1. 제정취지

UR타결에 따라 정부지원을 기술개발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에서 기술인력 양성, 정보 유통 촉진, 연구시설 확충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UR등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기술기반조성정책을 업종별 기술개발정책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우리산업의 국

제정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중심의 산업정책을 제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은 상공자원부 소관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부문의 발전을 위한 기술기반조성으로 함.

나. 상공자원부장관은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조합계획에 따라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계획(기술기반조성계획)을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다. 상공자원부장관은 기술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산업정보등의 수집·분석·유통의 촉진, 기술연구시설등의 확충, 기술연구의 집적화의 지원, 신기술보육사업, 국제기술협력의 촉진, 기술진단·지도 등과 같은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상공자원부장관은 산하 정부투자기관의 기술지원자금의 확대와 효율적 활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마. '94년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근거 규정을 이관함.

바. 학계·산업계 등에서 공학 및 기술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학 및 기술인을 발굴·지원하고 기술진흥사업을 행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공학기술아카데미를 설립함.

○ 공업발전법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공업발전법은 '89년 제정된 이후 개정이 없었던 바, 국내외 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 특히 WTO체제 출범 이후 개방화,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공업의 구조고도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집약산업, 지원서비스업 등 공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업종에 대

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공업 및 공업의 경쟁력 향상에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확대함.

- 나. 공업의 미래지향적 발전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상공자원부장관이 10년 단위의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토록 함.
- 다. 공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공자원부장관이 「첨단기술부문발전시책」을 수립토록 함.
- 라.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선정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로서 고시함.
- 마. 현행 「합리화사업」을 「구조개선사업」으로 개편하여 유망업종의 경쟁력보완을 위한 합리화사업을 폐지하고, 경쟁력약화 업종의 구조개선에 국한하여 운용함.
- 바. UR 보조금협정과 관련하여 구조개선업종의 선정에 있어 생산, 가공, 재고 등의 지표를 활용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토록 함.
- 사. 사업전환등에 의해 구조개선업종으로부터 원활하게 퇴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야. 공업의 자원사용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 상공자원부장관이 「자원절약적 구조전환 촉진시책」을 수립토록 함.
- 자. 경쟁력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부문별로 「경쟁력 강화시책」을 수립토록 함.
- 차.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제정추진에 따라 「공업기반기술향상계획」을 기술개발 중심의 「공업기반기술 개발계획」으로 개편함.
- 카. 전문기관의 육성, 개발제품의 판매촉진 등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보완함.
- 타. 상공자원부장관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업종전문화 유도시책」을 수립토록 함.
- 파. 민간의견의 효율적 수렴을 위해 「공업발전심의회」산하에 「분과별 민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국민은행법폐지법률안

1. 국민은행법 폐지사유

- 국민은행은 1962년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은행으로 설립되었으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겪고 있는 증가 등 자금조달 및 운용상 제약을 벗어나 설립목적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취급업무가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하고, 수신면에서도 대부분의 자금을 자체 예수금으로 조달하며, 여신면에서도 일반은행 등이 일반적으로 서민금융을 취급하고 있어 가게 및 소규모기업 금융면에서 볼때 국민은행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음.
- 이에 따라 그 설립근거법인 국민은행법을 폐지하고 동행은 은행법과 상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상업은행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 자율경영에 의한 생산성 제고와 능률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국민은행법을 폐지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상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봄.
- 나. 국민은행은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며 은행법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인가, 승인, 명령, 처분 또는 기타 행위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행하여진 것으로 봄.
- 다. 종전의 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은행에 대하여 하거나 국민은행이 한 법률행위등은 그 효력을 유지함.
- 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임명된 은행장, 집행간부 및 감사는 각각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로 보며, 그 임기는 동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함.
- 마. 국민은행법의 폐지와 동시에 업무용부동산투자와 관련한 은행법상의 제한 규정(제27조제1항제2호의2)은 그 적용을 5년간 유예함.
- 바. 민영화 이후에도 국민은행의 일반국민과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은 계속 유지토록 함.

○ 군납에관한법률개정안

1. 개정취지

법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규제완화를 위해 미군납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군납등록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아울러 불필요한 상공자원부장관의 군납물품의 수입추천, 수입된 군납용물품의 사후관리 및 군납대금 미회수의 처리승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군납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중 군납실적 법정기준 미달의 경우를 삭제함.
- 나. 군납업자가 군납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의 처리에 관한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함.
- 다. 군납의 촉진을 위한 상공자원부장관의 수입제한품목에 대한 수입추천제도 및 수입된 군납용 물품의 양도·폐기에 대한 승인제도를 폐지함.
- 라. 보안요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록후 군납계약전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적합판정을 받도록 함.

○ 보험업법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금융산업의 개방화·국제화·자유화 추진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험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현행법상의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보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보험법규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험행정규제의 완화

- 가. 보험회사 점포의 설치·이전·폐쇄는 현행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보험대리점은 현행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함.
- 나. 보험사업허가 당시에 주주자격의 제한대상이었던 자는 이후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계속 주주자격의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과도한 소급제한으로 사료되어 동 조항을 폐지함.
- 다. 보험계리업·손해사정업의 등록기관을 재무부에서 보험감독원으로 변경하며 손해사정인의 업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

- 보험산업의 개방화·국제화·선진화의 추진

- 라. “외국보험사업자”의 뜻을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지 않는 자”로 그

구분을 명확히 하는 한편, 허가받은 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내국보험사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하여 법조항을 정비함.

마. 보험상품종류 상호간에 내부보조를 차단하기 위하여 분리계정을 도입하며 보험상품 종류별로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함.

-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확충 등

바. 최근 금융의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금융기관간 경쟁심화 및 금리자유화에 의한 자산운용의 불확실성 증대로 보험경영상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어 현재의 책임준비금제도 이외의 별도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지급여력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사. 보험분쟁조정신청사안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을 경우 보험감독원장이 관계당사자에 대한 직권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현행 보험업법상의 벌칙조항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

1. 제정취지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이용을 위해 신용정보업을 육성하는 한편,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업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신용조사업(제3자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의 신용정보를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신용조회업(신용정보를 수집·가공·저장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및 채권추심업(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채권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또는 채권보·전경매신청·소송 기타 법적절차의 의뢰대행등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을 영위할 수 있음.

나. 자본금 규모는 100억원이상으로 하여 대외공신력을 제고시킴. 다만, 신용조사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5천만원이상으로 함.

다.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공동전산망 구축등을 통하여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하는 자)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공공기록정보의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에 대하여 집중교환·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구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신용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1)국가안보·기업비밀·개인사생활 관련정보등에 관한 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사를 금지하고,

(2)개인신용정보는 당해 개인과의 신용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 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도록 제한하고,

(3)신용정보 활용체제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4)금융기관, 백화점, 할부판매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게 하고,

(5)개인신용정보주체에 대해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을 인정하고,

(6)고의나 과실로 신용정보주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신용정보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바. 신용조사업법은 이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폐지하며 기존의 신용조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 법에 의한 인가를 받도록 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국채에너지지정세의 불확실성과 에너지소비를 둘러싼 지구환경문제의 대두등 국내외여건의 변화에 능동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제도와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에너지관련 기술개발 분야의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향후 에너지부문의 중요과제인 소요에너지의 안정수급과 환경조화형 에너지수급기반의 건설을 촉진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제도 및 관련제도 정비

(1)각주체별 노력책무의 설정

· 국가에너지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공급자, 에너지사용자, 에너지사용기자재 제조업자, 국민등 각주체별 노력책무를 규정함.

(2)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상공자원부장관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표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관리토록 함.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주요에너지시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 소속아래 에너지정책심의회를 설치·운영함.

(3)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시행

·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에너지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4)비상시대비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및 비상시 조치

· 국가에 대해 에너지공급부족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책무를 부여하고, 만일의 부족사태 발생시 단계적·효과적 대응하여 국민경제손실을 적정화하기 위한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상공자원부장관이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비상시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부가 에너지비축 의무의 부과, 에너지사용의 제한, 수급조정명령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5)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시행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과 수요절감을 기하기 위한 수요관리투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6)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등의 사용권고

· 상공자원부장관이 국가에너지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사용자·에너지공급자 등에 대하여 특정에너지

지사용기자재 및 공급설비 등을 사용·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7)에너지종합통계의 관리·공표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시책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으로 에너지종합통계를 작성·관리·공표토록 하고, 필요시 에너지공급자 및 주요사용자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통계업무의 전무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제도 정비

(1)목표·최저소비효율 기준제도의 적용대상확대

· 현행법상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목표·최저소비효율 기준제도의 적용대상을 에너지사용비중이 큰 발전설비등 에너지공급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함.

(2)에너지효율기준 미달기자재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이행명령제도 도입

·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현행법상 효율기준 미달기자재에 대하여 「공표」하는 제도를 「이를 공표하고 시정을 권고하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고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로 강화함.

· 효율기준 미달시의 제재제도 적용대상을 현행의 「목표·최저효율 미달시 및 목표·최대사용량 초과시」에서 「최저효율 미달시 및 최대사용량기준 초과시」만으로 한정토록 함.

(3)목표에너지원단위 권고제도의 적용대상확대

· 에너지 및 전기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촉진키 위하여, 현행 제조업에만 적용하는 목표에너지원단위 권고제도를 건축물에 대하여도 적용토록 확대함.

(4)폐열이용책 및 제3자 개발·이용제도 도입

· 산업폐열등 폐열의 이용을 촉진키 위하여, 폐열발생자에게 회수이용을 위한 노력책무 및 자가이용하지 않는 폐열에 대하여는 제3자 이용이 가능토록 협조할 책무를 부여하고,

· 상공자원부장관이 폐열발생자에 대하여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제3자에 대한 공급등을 권할 수 있도록 함.

(5)에너지절약분야의 규제제도 개선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는 등급표시기자재에 대한 현행 「등급부여제도」를 「등급신고제도」로 개정함.
-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에 대한 현행 에너지관리자 「채용제도」를 「선임제도」로 개정함.

다. 에너지기술개발시책의 추진기반 정비

(1)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제도의 정비

- 에너지기술개발시책을 장기체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장기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2)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사용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아가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대상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들 기관의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공자원부장관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함.

(3)기술개발투자의 권고

- 상공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사업자에게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출연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4)기술개발사업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 상공자원부장관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관리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열사용기자재의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1)열사용기자재 제조업에 대한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에 대한 현행 「허가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하고, 양도·합병 등에 대한 「인가제도」를 「신고제도」로 전환하여, 행정규제에 따른 불편요소를 완화함.

(2)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에 대한 지정제도의 등록제도 전환

- 보일러등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에 대한 현행 「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시공업에 대한 특정성을 배제하고 일정한 기준에 도달

할 경우 등록이 가능토록 함.

(3)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채용제도의 선임제도 전환

·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한 현행 「채용제도」를 「선임제도」로 전환함.

마. 기타의 법 개정사항

· 에너지관리공단 이사회에 대한 외부인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이사 수를 현행 6인이내에서 10인이내로 확대함.

· 그간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함.

○ 염관리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염생산을 희망하는 신규업체의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계염·재제염·가공염에 대한 제조허가제를 폐지하고, 최근 가공염중 죽염등 다양한 종류의 특수가공염이 생산되어 식용 및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보건사회부로 이관하여 관리토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기계염, 재제염, 가공염 제조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신고의 시행일을 재제염 및 가공염은 이 법 공포후 6월 이후에, 기계염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함.

· 가공염중 세척·분쇄·압축이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염(죽염등)에 관한 제조의 신고, 생산의 신고, 염의 규격규정 및 품질검사 등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함.

○ 정부조달및계약에관한법률제정안

1. 제정이유

정부조달협정의 타결에 따른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조달협정의 차질없는 이행과 정부조달 및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조달협정 및 규제규범을 반영,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조달 및 계약에 관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조달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예산회계법 제 6장 계약편을 대체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부조달에 있어 국제입찰에 의할 대상을 정함. 정부조달협정 협상시 우리나라가 양허한 내용을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의 범위로 정하여 그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조달일 경우에도 발주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함.
- 나. 계약의 일반적인 원칙을 명시함.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은 조달의 경우에는 발주관서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국적이나 물품의 생산지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하여 내·외 국민이 평등하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 다.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함.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현재 법률에 규정된 수의계약사유는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함.
- 라. 입찰은 실시할 때에는 공고를 의무화 함.
모든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입찰공고(통지)를 의무화 함으로써 입찰에 관한 정보취득에 있어 공평한 기회를 부여함.
- 마. 국제입찰에 있어서는 취조가낙찰제와 적격낙찰제를 원칙으로 함.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의 경우에는 최저가낙찰제 및 적격낙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의 조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낙찰자 결정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바. 계약은 인장 대신 서명에 의해서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이외에도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사. 차액보증금제도를 폐지함.
낙찰자 결정방법의 변경으로 불필요하게 된 차액보증금제도를 폐지하고 기타 보증금의 경우는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규정함.
- 아. 부정당업자제재 제도 개편
부정당업자는 국가기관에서 제재를 하고, 당해 제재기관 이외의 기관에 통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자. 정부조달과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함.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과정에서 제기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정부조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중소기업과대기업간의협력증진에관한법률안

1. 제정취지

중기업계열화촉진법,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 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과 분업관련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제정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UR타결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화·개방화에 대·중소기업의 협력과 분업을 통해 공동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현행 관련규정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공동 이익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위탁해야 할 계열화업종 및 품목을 지정·고시토록 하고, 계획생산을 통하여 원가절감 등을 기할 수 있도록 장기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함.

나. 모기업에 수급기업지원 및 공동연구개발 책무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취약한 자금 및 기술력의 향상을 기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정한 수급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모기업과 수급기업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토록 함.

라.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을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확보와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제도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사업영역분쟁 발생시 민간업계의 자율조정을 거친 후 정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유업종지정 및 해제근거를 마련하여 고유업종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대기업의 사업참여 연기 및 축소등의 조정기간을 2년이내로 하

여 사업조정 권고 및 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 중소기업기본법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 제정이래 현재까지 3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부분적인 개정만 그쳐 그 간의 대내외 경제환경변화에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규범적 효력이 저하됨에 따라 전면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관계법을 지도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의 의의를 갖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의 범위 산정기준을 종래의 양적개념(상시종업원수등)이외에도 질적 기준(영리를 목적으로 독립하여 소유하고 경영하는 자)을 병행적용하고, 양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함.

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시책을 수립·실시하고, 중소기업자 및 그 사업에 관계되는 자는 중소기업시책 실시에 협력하도록 함.

다. 중소기업의 정보화, 국제화 촉진등 새로운 중소기업시책을 규정함.

라. 유사한 성격의 기존의 중소기업시책을 통합하여 단순화함.

마.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분석·연구함으로써 효율적인 중소기업정책 수립과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등의 심의 지원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정책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진흥법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94. 12. 31. 적용시한 만료)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중소기업진흥법에 흡수·통합함으로써 중소기업지원체제를 단순화하는 한편, WTO체제 출범등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물류·환경문제와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자동화 및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동화센터 및 중소기업정보은행을 설치함.

- 나. 협동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권자를 건설부장관에게 시·도지사
로 변경하고 단지조성과 관련된 토지수용, 토지에의 출입 및 국공유지 매각
등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조문단순화.
- 다. 중소기업의 경영기반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지원계획, 물류현
대화 계획, 환경보전사업계획의 수립등을 신설하여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
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라.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측면에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주요내용을 흡
수하면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시 단체수의계약 외에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의 근거를 마련함.
- 마.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지도사의 등록 근거를 법에 명시
하고 지도사가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바. 중소기업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복
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이외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에 관한 사항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일원화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창업을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설립근거 마련등 일부 규정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진흥법상의 창업조성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신설하여 창업촉진 및 성장·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나.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등에게 시설·장소등 각종 지
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의 법적근거를 규정함.
- 다. 상공자원부장관의 사업자지정을 받아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자금·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및 해외기술을 알선·보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함.
- 마. 창업사업계획승인 대상업종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집약형업종에서 모
든 제조업종으로 확대함.

바. 창업사업계획승인시 일괄의제처리대상을 23개 법률 38개 인·허가에서 30개 법률 62개 인·허가로 확대함.

○ 한국산업은행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장기설비금융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금융국제화에 대비한 대외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조달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정자본금을 현행 1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함.

나. 산업은행이 중요산업 영위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한도를 납입자본금 범위내에서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확대함.

다. 업무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과 국무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등 그 절차를 간소화함.

라. 산업금융채권발행 및 채무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에서 30배로 확대하고 산업금융채권발행총액에 관한 국회의결을 생략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함.

○ 한국주택은행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민자참여확대를 통해 서민주택금융기관으로서의 장기·안정적인 대출채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향후 민영화에 대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정자본금을 3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하고 정부의 1/2이상 출자의무조항을 삭제함.

나. 자본금 분할형태를 출자증권에서 주식으로 변경하고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다. 법정준비금의 적립비율을 25/100로 인상함.

라. 은행법상 동일인의 주식소유한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일반은행과 동일한 소유한도를 적용함.

마. 민자참여 확대에 따라 정부지분이 50%미만이 되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임원·예산·결산·검사등에 관한 경과규정을 둬.

◎ 農林·水産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 1975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한 이래 내수면어업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으므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명칭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하고 법 적용 수면을 사유수면(신고제)까지 확대하며
- 내수면어업계 조직근거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내수면의 환경보호와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 명칭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서 “내수면어업법”으로 함.
- 나. 내수면개발 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 다. 개발지역지정, 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신고수리등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라. 사유수면에 대한 어업을 등록 또는 신고어업으로 하여 제도적으로 보호 육성함.
- 마.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존과 수질환경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유어낚시 신고제와 유어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바. 허가어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어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처하도록 함.
- 사. 어업의 허가와 신고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함.
- 아. 수질보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거나 동법에 의한 처분 또는 제한조건 위반시 해당어업을 제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수면어업과 환경보전을 병행토록 함.

자.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이 확정·발표('94.6.14)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지원체계의 개편 등을 위하여 관련되는 법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법 규정을 신설·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수산업”의 용어를 “농림어업”으로 바꾸고, “농어민”의 용어를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으로 바꿔 농림어업을 전문적인 직업으로 영위하는 유능한 경영주체를 중점 육성토록 함.

나. 직할시 이상의 지역등 농어촌 이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 지역과 개발제한구역등에 대해서는 농어촌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중 당해 시·군 거주지역과 3년이상 영농종사기간의 자격제한을 폐지하고, 생산자단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도 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라. 현행 위탁영농회사 규정을 농업회사법인 규정으로 대체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회사법인만이 그 명칭중에 농업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며, 농업회사법인이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마. 농업인등과 생산자단체 및 농림어업의 경영에 필요한 정보제공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바.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어가”, “농어민후계자”, “위탁영농회사”는 이 법에 의한 “전업농어업인”, “농어업인후계자”, “농업회사법인”으로 보며, 지방세법, 조세감면규제법등 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개정함.

○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UR이후 농업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농민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자율적·민주적 제도를 마련하여 농민을 위한 농민의 협동조합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건의('94.6.14.)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의 협동조합개편방향에 맞추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협동조합의 기능 개편등을 위하여 관련되는 법 규정을 신설·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민 용어를 타법에서 정한 용어와 통일하여 농업인으로 하고, 조합의 명칭을 그 역할과 기능에 맞게 현실화하여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지역농업협동조합, 특수농업협동조합은 전문농업협동조합으로 함.

나.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을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지역조합 설립 기준을 정하여 규모화를 유도하고, 조합원의 자격에 농업경영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을 추가하였으며, 1가구 1조합원 원칙에서 동일가구내 2인까지 조합원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라. 대의원회의의 구성 기준을 삭제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산·합병 또는 분할, 조합장 선출방식의 선택을 위한 정관의 변경은 반드시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함.

마. 조합에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고, 상임이사는 조합장의 추천에 의거 총회에서 선출토록 하고,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함.

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였으며,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임원선거운동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일부 준용토록 함.

사. 조합의 합병 촉진 유도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근거 및 조합간 공동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아.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의 설립촉진을 위해 1구역 1조합 원칙을 폐지하고, 설립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였으며, 경제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용사업은 불인정함.
- 자. 중앙회 임원에는 회장 1인, 신용사업 이외의 사업담당 부회장 1인, 신용사업담당 부회장 1인, 이사 19인 이상, 감사 2인 이상을 두되 상임은 회장, 부회장, 감사 1인으로 함.
- 차. 중앙회의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구성원의 2/3 이상을 회원 조합장으로 하고, 회장은 회원의 조합원으로 함.
- 카.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거 총회에서 선출하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추천토록 하고,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조합장중에서 선출하되 이사중 일부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영입토록 함.
- 타. 부회장의 직근 하급직원으로 집행간부를 두며, 집행간부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중에서 부회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토록 함.
- 파. 비회원조합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지도와 관련된 감독권의 일부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하. 조합장 선출방식의 선택을 위한 정관 변경은 차기조합장 선출전까지 결정토록 함.
- 거. 이 법 시행당시 중앙회의 회장, 부회장, 비상임이사, 감사는 이 법에 의해 선출된 임원으로 보고, 상임이사는 이 법에 의해 임명된 집행간부로 보며,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해 선출된 날로부터 기산함.
- 너.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전문조합에 대하여는 신용사업을 인정함.
- 더. 농·수·축·임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통합하여 별도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기획단을 설치 운영함.

○ 농지법제정안

1. 제정이유

UR이후 농업의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근간이며 농촌생활의 터전인 농지에 관한 제반제도를 우선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이

후 영세·생계농 보호위주로 운용되어 온 농지제도를 개편하여 다양한 농업경영체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지유동화를 촉진시킬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거래규제를 완화하며, 농지의 이용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농업현실에 부응하고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농지제도로 발전시키는 한편, 농지개혁법·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농지임대차관리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등 여러 법률에 복잡하게 분산 규정되어 있는 농지관련법률과 제도를 통합·정비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 되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보전되어야 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함으로써 향후 농지정책의 지표가 되도록 함.

나.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를 하는 자, 종묘 기타 농자재를 생산하는 자 및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등에 대하여도 소유자격을 인정함으로써 건전한 경영과 자본의 농업참여를 유도하고, 농업 및 농업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농촌활력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함.

다.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농지의 소유상한을 폐지하여 농업인을 비롯한 농업경영체가 영농규모를 확대하는데 장애가 되는 제약요인은 해소하여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밖은 농지의 소유상한을 3만제곱미터로 하여 투기적 목적의 농지소유를 방지하되, 농업인에 대하여는 재배작목, 경영능력, 농지의 집단화,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5만제곱미터까지 소유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이상의 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도록 함.

마. 농지소유자는 징집, 복역, 질병,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고, 자기 노동력의 부족, 농업경영 비용의 절감

등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경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바. 소유농지를 경영하지 않거나,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를 처분(다만, 상속등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1만제곱미터이내의 농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공시지가와 실제거래 가격을 참작하여 협의 매수하되, 법 시행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계획에는 농지의 지대별·용도별 이용계획, 경영규모확대 및 생산기반정비계획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의 임대차, 소유권 이전, 교환·분합 등을 통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아. 농지임대차관리법상의 농지임대차관련 조항중 임대차계약의 방법, 임대차의 기간, 임차료에 관한 사항을 흡수하는 한편, 임차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를 정함.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그 지정대상, 절차, 지정변경, 용도구역내의 행위제한 등에 관해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업진흥지역 관련 조항을 흡수하여 규정함.

차. 농지의 전용에 관해서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관련조항을 흡수하되, 필요한 자구수정을 하는 한편, 농지전용 규제 완화에 따라 우려되는 농지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농지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농작물의 경작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등을 금지하도록 함.

카. 농어촌에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농어촌산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지역으로의 산업시설 설치 편의를 위해 신고로 농지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함.

다.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지력증진법은 이를 폐지하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법주요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UR이후 수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어민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주적·자율적 제도를 마련하여 어민을 위한 어민의 협동조합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건의('94.5.24)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확정한('94.6.14)「농어촌발전대책」의 협동조합 개편방향에 맞추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협동조합의 기능 개편 등을 위하여 관련되는 법규정을 신설·보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용상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다른 협동조합과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 등 협동조합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나. 조합원 자격은 1가구1조합원 원칙에서 어업경영자와 어민후계자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가구내 2인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다.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 1인, 전무이사 1인, 이사5인이상 10인이하, 감사 2인을 두되, 전무이사외의 임원은 조합원 및 명예직으로 함.

라. 조합원 전문경영인(전무이사)제를 도입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토록 하고, 전무이사는 조합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토록 하며, 그 자격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마. 조합의 임원선거운동을 공직자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일부 준용토록 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조합의 합병촉진 유도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근거를 신설함.

사. 중앙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의 2/3이상을 회원 조합장으로 함.

- 아. 중앙회 임원에는 회장1인, 신용사업 이외의 사업담당 부회장 1인, 신용사업 담당부회장 1인, 이사 12인, 감사 2인을 두되 상임은 회장, 부회장, 감사 1인으로 함.
- 자. 회장은 회원의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직접 선출토록 하고, 회장은 조합원 자격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차.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거 총회에서 선출하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추천토록 함.
- 카. 부회장은 직근 하급직원으로 집행간부를 두며, 집행간부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20년이상 근속한 직원중에서 부회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토록 함.
- 파. 조합의 여유금 운용은 국채·공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과 중앙회에만 예치토록 함.
- 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위촉한 사업과 정부시책에 관련된 업무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고 지도와 관련된 감독권의 일부를 수협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거. 조합의 전문경영인(전무이사)제는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함.
- 너. 이 법 시행당시 조합의 간부직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조합의 간부직원으로 봄.
- 더. 이 법 시행당시 중앙회의 회장, 부회장, 비상임이사, 감사는 이 법에 의해 선출된 임원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상임이사는 이 법에 의해 임명된 집행간부로 보고,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해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함.
- 러. 이 법 시행후 설립되는 업종별 수협과 수산물 제조수협은 경제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용사업은 불인정.
- 머. 농·수·축·임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통합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기획단을 설치 운영함.

○ 임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임업협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을 기하고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대책위원회의 개편의견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협동조합개편방향에 맞추어 임업협동조합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임업협동조합을 지역단위로 구성된 “지역임업협동조합”(현행조합)과 전문업종별로 구성된 “전문임업협동조합”으로 구분하고 전문임업협동조합의 구역 및 사업범위를 새로이 규정하였음.

나. 전문임업협동조합은 지역조합을 구역으로 하는 조합과 시·도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 등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발기인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농림수산부문 협동조합간에 상호협력과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라. 지역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산림경영협업체를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마. 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일가구내에서 2인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복수조합원제를 도입하였음.

바. 준조합원은 구역내에 소재하는 산림소유자는 물론 구역내 거주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확대하였음.

사. 조합장의 대표권과 경영권의 분리여부는 조합자율에 맡기되 경영권을 분리시키는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고 책임경영하도록 하였음.

아. 조합에 간부직원을 두고 이를 포함한 직원의 임면은 조합장이 하되 조합에 전문경영인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임면하도록 하고, 중앙회에는 임기직집행간부를 두고 직원과 집행간부는 중앙회장이 임면하되 부회장 또는 상임이사 소관 집행간부는 부회장 또는 상임이사의 제청을 받아 임면하도록 하였음.

자. 조합 및 중앙회 운영의 활성화와 구성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조합은 산림경영의 수탁과 조합원을 위한 공원묘지의 조성등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중앙회는 산림내 지하수개발공급, 산림내 토석채취 판매등을 신설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차. 조합장과 중앙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2/3이상을 조합원 또는 회원조합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카. 중앙회장의 대표권과 사업경영권을 분리하되 경영권은 사업본부장(부회장 및 상임이사)이 분장하도록 하였음.

타.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이 조합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해산명령을 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합 등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청문제도를 설정하였음.

◎ 科學技術 · 交通 · 遞信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1) 운전면허를 취득하고도 실제 운전에는 미숙한 현행 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하고 만성적인 시험적체를 해소하며, 자동차운전학원을 공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에 기능시험권을 부여하는 지정자동차운전학원제도를 도입하고

(2) 교통질서의 확립과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법칙금의 부과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고 일부 즉결심판청구 대중행위를 통고처분으로 대체함과 동시에 면허취소등 국민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내릴 때에는 사전에 처분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제도를 도입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시에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토록 하는 등

(3) 지난 4월 실시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의견 국민공모에서 채택된 제안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현행법상 “차선”이라는 용어가 선의 개념(line)인지 면의 개념(lane)인지 혼동될 소지가 있어 차선은 line의 개념으로 하고 lane의 개념인 “차로”라는 용어를 신설함.

(2) 중앙선침범 행위에 대하여는 교통단속·사고처리시 특별히 취급되고 있음에도 개념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중앙선과 가변차선의 정의를 신설하고 중

양선침범의 개념을 구체화 함.

- (3)시·도지사의 신호기·안전표지의 설치·관리권한을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의 권한으로 규정함.
- (4)신도시와 같이 대규모로 주택 또는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사업주체에서 신호기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도로굴착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신호기등이 파손·철거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유발한 자가 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토록함.
- (5)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주변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
- (6)대도시 교통소통능력 제고를 위하여 버스전용차로의 설치권한을 시·도지사 이외에 시장 등에게도 부여함.
- (7)현행법상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우측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용어를 좌회전 또는 우회전으로 현실화시키면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회전을 유턴(u-turn)으로 바꾸어 관련조문을 정리함.
- (8)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토록 하고,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시에 횡단보도 안에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함.
- (9)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차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함.
- (10)긴급자동차가 아니면서 긴급자동차와 비슷한 등화, 색깔, 장치 및 표식등을 표시한 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11)현행법상 경찰관의 음주측정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측정은 합법적일수 없다는 법원의 견해가 있어 교통사고조사시에 음주측정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음.
- (12)택시의 합승·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행위,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썸땡한 차나 속도측정기 탐지용 초단파탐지기등 자동차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는 행위, 도로에서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되는 시비·다툼을 벌이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13)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상태로 승차 또는 적재하고 운전하지 않도록 규정함.
- (14)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사람은 1년간 초보운전자 표시를 부착하고 운행토록 함.
- (15)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사람을 사상하지 않고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며,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신고할 의무를 면제함.
- (16)도로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사기간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규제할 때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후에는 훼손된 교통안전시설을 원상복구토록 함.
- (17)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보도에 대한 일부 점용 허가시에는 의견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18)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증을 교부받기전에 운전하는 사례가 있어 면허의 효력발생시점을 명문화하고, 면허조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
- (19)음주 무면허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도주의 경우에는 5년, 단순교통사고 야기도주의 경우에는 4년, 3회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악질 운전자에 대한 면허결격기간을 강화하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6월로 단축함.
- (20)운전면허시험내용중 자동차등의 구조에 관한 시험을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으로 하고 법령 및 구조등의 시험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통안전수칙의 범위내에서 실시하게 함.
- (21)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허가제로 되어 있으나 이를 도로교통법에 흡수함.
- (22)인가된 자동차운전학원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원을 지정자동차운전학원으로 지정하고 지정절차, 지정기준, 지정학원에 두는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기준, 기능검정절차, 지도·감독방법, 지정취소 및 휴원처분 기준등

을 신설하고 동학원을 졸업하고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졸업증명서에 표시된 기능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능시험을 면제받아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과시험합격만으로 면허취득가능.

- (23)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사유에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를 추가하고, 중앙선침범·과속등 사고요인행위가 아닌 경미한 위반행위로 면허정지대상이 된 사람은 일정한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정지처분을 갈음할 수 있게 함.
- (24)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연구소”를 “연구원”으로 개칭하고 연구원에는 교통관련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부설 교육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25) 지정학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기능검정의 공정한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자동차학원연합회를 공법인으로 설립함.
- (26) 도로교통법상의 수수료를 운전면허시험 또는 면허증의 교부, 적성검사의에도 각종 신고·신청·인가·증명·열람시에도 징수할 수 있게 함.
- (27)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장치하고 운행한 자동차에게도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을 할 수 있게 함.
- (28) 운전면허의 취소, 자동차사용정지, 자동차운전학원의 휴원등의 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처분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제도를 도입함.
- (29) 도로교통에 관한 국가차원의 교통안전수칙을 제정 보급하여 보행자나 운전자가 교통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지키도록 함.
- (30)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도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전문연구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 (31) 과로등 운전금지 위반자,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자, 안전운전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벌금을 현행 10~20만원에서 30~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32)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고속도로에서의 횡단등 금지 위반, 면허증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자등에 대한 즉결심판 회부를 통고처분으로 변경함.
- (33)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회전위반, 주·정차 위반등 교통사고 요인행위와 소동저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칙금 부과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34)주·정차 관련 조문의 규제대상은 차로 되어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는 자동차에 한정하고 있어 이를 차로 확대하고, 대여사업자가 자동차만 대여한 상태에서 대여받은 사람의 주소·성명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여받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 도선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정부에서 주관하던 도선사수급계획제도를 폐지하여 도선사와 사용자측이 자율적으로 이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규제적 요소를 완화하고, 도선료와 도선선료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자율결정토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부문 외국인투자개발 5개년계획에 의거 1995년부터 도선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선사의 자격요건에서 외국인 제한규정을 삭제함.

나. 해운항만청장이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도선사를 선발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현행 정부 주관 도선사수급계획제도를 폐지함.

다. 조선소근무 운항관리자가 건조·수리선박을 시운전시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강제도선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법정요율로 되어 있는 도선료와 도선선료는 도선사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사전 신고토록 함.

마. 해운항만청장은 도선운영의 자율화에 따라 항만별 도선사의 필요인원 선발요청 및 도선요율 결정,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도선운영질서확립 기타 도선운영제도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를 위하여 도선사 및 사용자가 참여하는 도선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선박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선사가 도선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선박의 노후, 계약조건 불리등을 이유로 차별도선을 할 수 없도록 도선사에게 의무를 부여함.

○ 원자력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 최근 원자력을 둘러싼 국내외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원자력정책의 수립·결정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원자력개발·이용을 촉진하며,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는 등
- '58년 제정이후 10여차례 개정(최근 '86년 개정)을 통하여 현행법령체계를 이루고 있는 원자력법을 국내외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발전적으로 개정·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원자력위원회를 국가원자력정책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현재 5인 이상 7인 이하를 7인 이상 9인 이하로 확대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각계전문가의 참여폭을 넓혀 균형있게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정책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함.
- 나. 원자력개발·이용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근거를 신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원자력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자력 연구개발계획을 수립·시행과 그 소요재원을 정부출연금,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출연금 등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종전에는 그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와는 별도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동 허가신청시에 일괄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민원서류를 간소화함.
- 마. 원자력 관계사업자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국제규제물자 계량관리규정”을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으로 변경하여 계량관리대상을 종전의 국제규제물자에서 국제규제물자중 핵물질로 국한하여 현실에 맞게 하고, 핵물질 방호제도를 체계화 함.
- 바. 원자로 및 관계시설중 원자로의 수명기간동안 건전성 입증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부가 인정하는 성능검증을 받도록 성능검증기관 허가제도를 신설함.

- 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주기적인 안전성 평가결과에서 도출된 새로운 안전규제요건을 기 허가된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아.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시설 등의 해체시 이를 신고하던 것을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해체토록 함으로써 해체의 안전성을 강화함.
- 자. 핵연료주기사업 및 폐기업 허가신청서류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추가하도록 함.
- 차. 핵연료주기사업자 및 폐기업자는 시설공사에 착수하기전에 설계 및 공사방법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함.
- 카.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동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출연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출연금으로 취득하는 재산(물품포함)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되, 정부가 필요시 또는 사업종료시 기금재산으로 귀속하도록 함.
- 타. 국내 기술수준의 향상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 용기의 제작·사용에 대한 승인제도를 신설하여 국산화를 촉진함.
- 파. 원자력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폭관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방사선 피폭선량의 판독허가제도를 신설함.
- 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해석·제작·품질보증의 방법론 등에 대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Topical report)”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일한 기술주제에 대한 인·허가 서류의 제출 및 심사를 생략케 하는 등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치·운영허가 신청서류의 간소화 및 심사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도록 함.

○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국가통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잉여 통신설비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통신사업의 구조개편에 따라 증대되는 통신위원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신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 가. 국가통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자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전송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목적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나.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설립하고, 정보통신 산업이 효율적인 육성·발전과 국제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설립하며, 정부·통신사업자등이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다.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 라. 통신사업 구조개편에 따라 증대될 통신사업자 허가 및 통신사업자간 적정 경쟁의 확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도록 하고, 위원회 사무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 기본통신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고 유선·무선의 결합 등 급격한 통신기술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 전기통신사업자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영역, 사업자수, 지분제한등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통신산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통신편익을 증진하여 국가전반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

2. 주요개정내용

- 가. 통신사업자가 사업 다각화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전기통신 사업자로 육성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현재 기술적·지역적 제한여부에 따라 일반통신사업자와 특정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구분을 폐지함.
- 나. 전기통신역무를 기간통신사업자가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공할 수 있는 역무와 그외의 역무로 구분하되, 그외의 역무는 모든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다. 체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전기통신업무 제공 계획의 타당성, 전기통신설비 규모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함.
- 라. 일반통신사업자 및 특정통신사업자의 구분폐지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한도를 종전의 특정통신사업자 수준으로 통일하되, 전화사업은 공공성을 감안하여 현행한도를 유지하도록 함.
- 마. 부가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 바.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공공이익의 증진이나 공정경쟁에 필요한 경우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자 또는 직무에 관하여는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사. 상호접속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간에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주소,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함.
- 아.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토양환경보전법제정안

1. 제정이유

농약·화학비료등의 사용량증가와 폐기물매립지등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속광산지역등의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관리할 체계적인 법률이 미흡하여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된 토양의 개선등 토양환경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적용대상을 농경지·산림·시가지등의 흙으로 하는 한편,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토양측정망의 상시운영 및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나.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이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토양오염유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

-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또는 폐쇄·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영향 또는 지장을 초래할 토양오염 우려 기준과 토양오염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토양오염방지조치를 명하거나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오염토양개선사업 및 토지등의 이용방안등에 관한 대책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마. 대책지역안에서는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농·축산물의 재배자등에 대하여 토지등의 이용및 농·축산물 재배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오염원인자가 배상하도록 하며, 토양을 오염시키는 각종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전기통신공사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통신시장의 개방등 급변하는 대내외 통신환경변화에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사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개정내용

- 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사업의 다각화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통신사업자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그 업무범위에 “기타 공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함.
- 나. 구법상의 용어인 “공중전기통신”을 현행법상의 용어인 “전기통신”으로 변경함.

○ 항만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예선업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항만시설 사용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의 생산성 향상 및 민간의 항만운영 참여를 활성화하며, 현재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시설운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여 항

만시설의 탄력적인운영과 요금수준의 현실화로 항만개발투자비의 회수가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 항만개발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나.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리청에 신고하여야만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에 의해서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운영의 민영화체제를 마련함.
- 다.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시설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청 이외의 항만시설운영자는 사용요금·징수방법 등을 관리청에 신고함으로써 항만시설사용료를 결정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라. 해운항만청장이 항만별로 예선정수를 정하고 그 정수범위내에서 예선업을 허가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예선업 참여규제를 완화함.
- 마. 예선업체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관계를 통하여 예선업의 전문화 및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량화물의 화주·외항화물운송사업자·조선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
- 바.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예선사용료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예선업계의 자율화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 사. 조선소구역내에서 건조, 수리, 시운전을 목적으로 선박등을 이동(조선소 입·출항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선소의 생산활동의 일부분으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한 예선업에 관한 제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 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의 범위안에서 점용료를 면제토록 하여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도모함.
- 자. 해운항만청장은 예선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예선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등을 협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차. 전산처리설비 이용문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環境 · 保健

○ 국민건강증진법안

1. 제정취지

국민의 생활수준향상으로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으나 식생활변화, 운동부족, 흡연 및 음주등 생활양식의 변화로 만성퇴행성질환이 만연되고 있어 국민생활의 질적저하와 국민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보건정책의 방향을 상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중심의 소극적 방법에서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등의 적극적 방법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함.

2. 주요내용

-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함.
-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시책과 국민보건교육계획을,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지역실정을 감안 자체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정책자문기관으로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건강증진의 날(달)을 설정하며, 건강한 가정생활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당사자의 건강확인서를 서로 교환하도록 권장함.
-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보도나 광고에 대하여 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요청하거나 광고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운동을 적극 실시하고 담배갑포장지 앞·뒷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경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자동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19세미만의 자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중이용시설등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금연을 위한 조

치를 강화함.

-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지역사회 주민, 단체 및 공공기관등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함.
- 보건교육은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수준 등에 따라 실시하며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학교, 사업장, 의료기관 및 단체는 그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상태, 식품섭취 및 식생활조사등 국민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뇨, 고혈압 및 심장질환등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특수음식점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예방과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하도록 함.
- 시·군·구의 장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건강증진사업을 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설립하도록 함.
-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보건사회부에 설치함.
- 기금은 아래의 재원으로 조성함.
 -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 담배사업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담배 사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출연금
 - 의료보험 보험자의 예방보건사업비(건강검진비를 포함한다)중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 기금의 운용등으로 생기는 수익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건교육자료개발, 협회의 건강증진사업운영비의 일부를, 국가는 구강건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는 보건사회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시설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노인,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두도록 함.

○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지의 천명 및 대책의 강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개념, 수익자 부담원칙등을 도입하고, 기타 개별법제정에 따른 조문정비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을 법의 기본이념에 추가
- 나. 지하수오염을 환경오염의 범위에 추가하며, 수질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범위에 온배수나 담수배출 등으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변화를 포함.
- 다. 환경개선을 위한 산업의 실시에 따라 현저한 수익을 얻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사업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신설함.
- 라. 환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상황의 조사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마.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오염을 배출 규제대상에 추가
- 바. 정부는 환경자원의 과도한 이용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
- 사. 정부는 지구환경보전에 노력하고 지구환경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명시

◎ 法院 · 法務

○ 검찰청법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정부 출범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검찰

제도 개선의 성과를 반영하고, 사법부에서 입법추진중인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검찰관련사항에 대하여 사법부의 의견을 수용하고, 기타 일부조문의 용어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고등검찰청의 지부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함.
- 검찰총장의 정년을 65세로, 검사의 정년을 63세로 각각 상향조정함.
- 마약수사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사법경찰관 지명 근거규정을 신설함.

○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으면 경매법원은 그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바, 경락인이 이를 이용하여 대금납부기일을 연기시킬 의도로 항고 이유도 없이 항고를 하는 경우가 많음(1992년 및 1993년의 통계에 의하면 경락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0.3%에 불과함).

나. 경락인의 이와 같은 항고의 남용으로,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이 증가하는 불이익을 입게되고, 후순위권리자는 선순위권리자의 지연손해금이 증가함에 따라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배당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입게 됨.

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손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대법원의 불필요한 업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락대금 납부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락인의 항고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경락인이 항고를 하는 경우에도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개정함.

나. 경락인의 항고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항고인은 위 보증금 중, 경락대금에 대한 항고일부터 항고기각결정 확정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규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다. 경락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위 나. 항의 금액을 배당금액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신설함.

○ 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가. 상업등기는 상거래의 안전·원활을 도모하고 상인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상업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하는 제도로써, 위 상업등기사무와 관련된 가장 큰 민원사항인 등·초본의 발급지연을 해결하고 등기부등 장의 보관처리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소위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상업등기사무처리절차의 도입이 필요함.

나. 현행 상업등기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법의 경우 규정상 등기부등 장부는 모두 부채식 장부만을 의미하게 되어 있으므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로 등기부를 조제하고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그에 다른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고 또 그와 관련하여 현행 부채식 규정과의 모순점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특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사무처리에관한특례규정의 신설·상업등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등기사항이 등록된 자기디스크를 등기부로 보며, 등기소에는 자기디스크외에 제136조 소정의 등기부는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등기부의 보관·관리 및 기타 등기사무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 규칙에 위임함.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함.

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부채식 장부를 전제로 하여 규정된 등기용지에의 지방법원장의 직인날인과 폐쇄된 등기용지의 폐쇄등기부에의 편철 조항의 적용을 배제함.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국제화·개방화추세 및 정보화사회의 급속한 진전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최근 증가일로에 있는 외화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침해사범 및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세관공무원 및 체신관계공무원에게 사범경찰권을 부여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계량및측정에관한법을 제정에 따라 일부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체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의 체신관계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전파법·전기통신기본법위반사범에 대한 사범 경찰권을 부여
- 나. 관세청의 세관공무원에게 외화밀반출사범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외화불법수출입사범·지적재산권침해사범에 대한 사범경찰권을 부여

○ 소년원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기관명칭 “소년감별소”의 “감별”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동물의 암수, 예술품의 진위를 가린다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어 기관명칭으로 사용하기에 적합치 않아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소년감별소의 명칭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변경
- 동 기관명칭 변경과 관련된 용어의 정비

○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의 취지 및 내용

가. 개정취지

1954년 현행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영역에서의 발전과 변화로 인한 법규범과 현실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민주화의 결과에 따른 기본권보장의 강화요청에 실질적으로 부응하여 인신구속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제정이래 축적된 형사소송 실무경험을 반영하여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기하는 동시에 국외도피사범에 적극대처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등 형벌권 행사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시안

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단독사건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을 별정으로 관할권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제20조제1항중 “전조의”를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합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로 한다.

제23조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대표변호인) ①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에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제52조중 “공판조서”를 “공판조서 및 기일이외의 증인신문조서”로 한다.

제55조의 제목중 “공소조서열람권”을 “공소조서열람권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을”을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각 “조서”를 각 “공소조서”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간인하여야”를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로 하

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서명날인은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외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제2항중 “5만원”을 “다액 50만원”으로 하고,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4조중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중 “구속일시·장소”를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로 한다.

제92조제3항중 “제306조제1항”을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으로 한다.

제95조제1호중 “10년이”를 “장기 10년이”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피고인이 피해자 기타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의 제목 “(직권보석)”을 “(임의적 보석)”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전조의”를 “제95조의”로 한다.

제97조제2항중 “청구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전항과 같다.”를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외에는 제1항과 같다.”로 하고, 제3항중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 및”을 삭제한다.

제10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피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규정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기타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제151조제1항중 “5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161조제1항중 “5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1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무소, 학교, 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당해 공무소, 학교, 병원, 기타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8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고인의 빈곤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8조의2 제목중 “구속”을 “체포·구속”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불법구속의”를 “불법체포·구속의”로 하며, “관할 경찰국, 경찰서의 피의자의 구속장소를”을 “관할 심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으로 하고, “피구속자를 심문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을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피구속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로 하고, “즉시 사건을”을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으로 한다.

제2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0조의2(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

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00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0조의3(준용규정)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4항, 제102조제1항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체포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각 해당 규정의 구속은 체포로 본다.

제201조제1항단서중 “단, 5만원”을 “다만, 다액 5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1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신문) ①제200조의2, 제206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긴급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이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 또는 긴급구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지방법원판사는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심문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지방법원판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심문한 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항의 구속영장청구에 기하여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⑦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8조 내지 제91조의 규정은 제2항의 구인에 준용한다.

제2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 제201조의2제2항, 제206조,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구인 또는 긴급구속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구인 또는 긴급구속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04조의 제목중 “보고”를 “통지”로 하고, 동조본문중 “구속영장”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으로 하며, 각 “구속”을 각 “체포 또는 구속”으로 한다.

제207조의 제목중 “영장발급기간”을 “영장청구기간”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며, “지방법원판사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내, 기타의 시 또는 군에서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를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중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를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로 하고, 제3항중 “전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제214조중 “5만원”을 “다액 50만원”으로 한다.

제214조의 제목중 “구속”을 “체포와 구속”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구속영장”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으로 하며, 각 “구속”을 각 “체포 또는 구속”으로 하고, 제2항제1호중 “구속영장”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으로 하며, 제3항의

각 “구속”을 각 “체포 또는 구속”으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제6항중 “구속”을 “체포 또는 구속”으로 하여 동항을 제9항으로 하고,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며, 제8항중 “구속영장”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으로 하고, 단서를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이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여 동항을 제11항으로 하고, 제9항중 “날로부터 결정한 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제202조, 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여 동항을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3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기타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제4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⑥제98조, 제1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에 준용한다

제214조의3의 제목중 “재구속”을 “재체포 및 재구속”으로 하고, 본문중 “제2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을 “2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으로 하며 “구속”을 “체포 또는 구속”으로하여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제2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를 제214조의3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1호 소정의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

②법원은 제1호 소정의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제216조제1항중 “제201조,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을 “제200조의2, 제201조, 제206조,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으로 한다.

제25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원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 된다.

제277조본문중 “다액 10만원”을 “다액 100만원”으로 하고, 동조단서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2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8조중 “아니하는”을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으로 한다.

제280조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①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86조의2 본문중 “결정하여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292조제2항중 “서류를”을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거나,”로 한다.

제311조중 “검증,감정의”를 “검증의”로 한다.

제314조본문중 “전2조의”를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로 하고, “질병”을 “질병,외국거주”로 하며, 단서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316조제2항중 “질병”을 “질병, 외국거주”로 한다.

제331조단서를 삭제한다.

제363조제1항중 “제328조에”를 “제328조제1항에”로 한다.

제3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389조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불요)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19조중 “제415조본문의”를 “제415조의”로 한다.

제435조제2항중 “정지하여야 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한다.

제458조의 제목“(공소규정의 준용)”을“(준용규정)”으로 하고, 동조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482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하고, “금액의 1,000원으로 산정한다”를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로 한다.

제483조중 “검사가 공매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를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IV. 최신법령 목록

(1994. 6.11.~ 1994.8.10)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법 률 4762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	1994. 7.20
4763	국회도서관중개정법률	1994. 7.20
4764	의정연수원법	1994. 7.20
4765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1994. 7.27
4766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 법률	1994. 7.27
4767	각급법원관사정원법중개정법률	1994. 7.27
4768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4. 7.27
4769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994. 7.27
4770	행정소송법중개정법률	1994. 7.27
4771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1994. 8. 1
477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개정법률	1994. 8. 1
477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1994. 8. 3
4774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 등에관한법률	1994. 8. 3
477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	1994. 8. 3
4776	수출보험법중개정법률	1994. 8. 3
4777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	1994. 8. 3
4778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1994. 8. 3
4779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1994. 8. 3
4780	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1994. 8. 3
4781	수도법개정법률	1994. 8. 3
4782	하수도법중개정법률	1994. 8. 3
4783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1994. 8. 3
478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개정법률	1994. 8. 3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조 약 1225	직물류국제무역에관한약정의연장의정서	1994. 6.15
1226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한·중산업협력위원회의설치에관한협정	1994. 6.15
1227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민간항공기산업기술협력의설치에관한양해각서	1994. 6.15
1228	대한민국정부와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과학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	1994. 6.21
1229	대한민국정부와우주베키스탄공화국정부간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에관한협정	1994. 6.29
1230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영해바깥해상에서의사고방지에관한협정	1994. 7. 5
1231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철새보호에관한협정	1994. 7. 5
1232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환경분야에서의협력에관한협정	1994. 7. 5
1233	대한민국정부와필리핀공화국정부간의군수·방산협력에관한양해각서	1994. 6.23
대 통 령 령 1427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6.15
14279	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6.16
14280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1994. 6.16
1428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6.16
14282	수도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6.16
14283	학교급식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6.17
1428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1994. 6.17
14285	공중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6.20
14286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자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94. 6.20
14287	교육공무원징계령중개정령	1994. 6.24
14288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개정령	1994. 6.25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4289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1994. 6.28
1429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개정령	1994. 6.28
14291	공산품품질관리법시행령개정령	1994. 6.28
14292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시행령	1994. 6.28
14293	마약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6.28
14294	항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6.28
14295	예산회계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6.30
14296	조달기금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6.30
1429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	1994. 6.30
14298	등록취소또는해산된정당의잔여재산에대한국 고귀속절차에관한규정	1994. 6.30
14299	주민등록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6.30
14300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 령	1994. 6.30
14301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6.30
14302	군인연금법시행령개정령	1994. 6.30
14303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1994. 6.30
14304	저작권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6.30
14305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6.30
14306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6.30
14307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6.30
14308	한국한의학연구소법시행령	1994. 6.30
14309	자동차등록령개정령	1994. 6.30
14310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6.30
1431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6.30
1431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4. 6.30
14313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1994. 7. 1
14314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 관한규정중개정령	1994. 7. 2
1431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 령	1994. 7. 4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4316	수산물검사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7. 5
14317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7. 6
14318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1994. 7. 7
14319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7. 7
14320	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7. 7
14321	공업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7. 7
14322	항공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7.11
14323	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7.13
14324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7.15
14325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7.15
14326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1994. 7.16
14327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1994. 7.16
14328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7.20
14329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7.20
14330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7.20
14331	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7.20
143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4. 7.20
14333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7.20
14334	소방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7.23
14335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7.23
1433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4. 7.23
14337	중앙교육심의회규정중개정령	1994. 7.23
14338	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4. 7.23
14339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1994. 7.23
14340	지하수법시행령	1994. 7.23
14341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4. 7.23
14342	우편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7.23
14343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93. 7.23
14344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4. 7.26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434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7.26
14346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7.26
14347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7.26
14348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7.26
14349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7.30
14350	의료보험법시행령개정령	1994. 8. 1
14351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개정령	1994. 8. 2
14352	공동주택관리령중개정령	1994. 8. 3
14353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8. 3
14354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8. 3
14355	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중개정령	1994. 8. 5
14356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4. 8. 8
14357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8.10
14358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8.10
총 리 령 456	경제기획원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4. 6.18
457	환경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개정령	1994. 6.25
458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자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4. 6.28
459	공무원특별훈련규칙중개정령	1994. 7.15
460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	1994. 7.18
내 무 부 령 617	경찰공무원승진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6.28
618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7. 1
619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7. 1
620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7. 1
621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7.12
623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8. 3

공 포 번 호	진 명	공포연월일		
재 무 부 령	1982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중개정령	1994. 6.13	
	1983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6.15	
	1984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7. 1	
	1985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7. 1	
	1986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7. 1	
	1987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7. 1	
	1988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7. 1	
	1989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7. 1	
	199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6.30	
	1991	국유재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7. 4	
	1993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7. 8	
	1994	재무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4. 7.15	
	1995	계약사무처리규칙중개정령	1994. 7.20	
	1996	대형공사공고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4. 7.20	
	1998	지방국세청및세무서사무분장규칙중개정령	1994. 8.10	
	1999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50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한세무서하부조직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4. 8.10	
	법 무 부 령	386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7.20
	국 방 부 령	446	국방부행정감사규칙중개정령	1994. 7.25
	교 육 부 령	650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6.16
651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7.23	
652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8. 4	
653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제등실시지역과그시행에관한규칙개정령	1994. 8. 4	
문 화 체 육 부 령	1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6.17	
	13	저작권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7. 1	
	14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7. 4	
	15	국립국악원대관규칙중개정령	1994. 8. 2	
농 립 수 산 부 령	1143	어선법시행규칙개정령	1994. 6.16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144	어선의등록·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개정령	1994. 6.16
1145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6.25
1146	축산법시행규칙개정령	1994. 6.29
1147	수산물검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7.12
1148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4. 7.28
1149	어선용품의형식및제조시설의승인등에관한규칙개정령	1994. 7.28
1150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8. 4
1151	어선또는어선용품의우수사업장지정등에관한규칙	1994. 8.10
상공자원부령 3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6.21
37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4. 7. 7
38	공산품품질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	1994. 7. 7
39	상공부자체감사규칙중개정령	1994. 7.25
40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8. 1
41	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8. 1
42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중개정령	1994. 8. 1
4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7.30
4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8. 6
45	상공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1994. 8. 6
건설부령 556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7.21
557	지하수법시행규칙	1994. 8. 3
55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8. 3
보건사회부령 931	한방의료에관한한시조직설치규칙중개정령	1994. 6.15
932	국립재활원운영규칙	1994. 6.16
932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4. 7.21
933	약사법시행규칙개정령	1994. 7.18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934 결핵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7.18
	935 기생충질환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7.29
	936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	1994. 8. 2
노 동 부 령	92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개정령	1994. 7. 4
	93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1994. 8. 2
	94 직업안전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	1994. 8. 2
교 통 부 령	1027 항공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7.11
	1028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8. 6
체 신 부 령	872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6.18
	873 체신부현업관서의조직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령	1994. 6.29
	874 우정연구소분소의명칭·위치·관할구역과우정연구소및분소의운영세칙폐지령	1994. 6.29
	875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	1994. 6.28
	876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칙	1994. 8. 6

국내입법의견조사 94-4 사교육의 합리화

1994년 10월 20일 印刷

1994년 10월 25일 發行

發行人 張 明 根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주) 한국컴퓨터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